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5년 10월 6일(화) 14:00 ~ 17:00  
| 장 소 |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19층)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인사말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이 법률에 명시되어 규제대상이 된 것은 1999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 시정업무를 이관 받아, 고용 및 업무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매년 200건이 넘는 성희롱 진정을 접수받아 2015년 상반기까지 총 1,817건의 성희롱 진정사건을 처리하였으며, 모호했던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성희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대학의 성희롱 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대해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많이 문제제기가 되었던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제작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에 보급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군인의 성희롱 피해실태조사 등도 실시하였으며, 군대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동영상 제작하여 각 군에 보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에서 일부 선생님들에 의해 동료 여선생님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여학생이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는 소식에 우

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는 초중고 학생들이 피해자인 성희롱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하여 왔지만, 진정건수가 미미하여 미처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성인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당하는 성희롱도 그 피해와 후유증이 적지 않지만, 아동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피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그동안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도 선생님에게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일부 소수의 선생님들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세심하게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토론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학교 현장의 실태와 함께, 학교 현장이나 학교 외곽에서 지원하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앞으로 정책적 대안들을 다시 세우고 정립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발제와 토론자로 와 주신 분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와 주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며 인사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 프로그램

### 가. 개요

- ▣ 일 시 : 2015. 10. 6.(화) 14:00 ~ 17:00
- ▣ 장 소 :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19층)

### 나. 프로그램

좌 장 :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시간	내용 및 발표·토론자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
14:10~14:30	<발표 1> • 학교 성희롱 사건의 특성과 처리과정의 문제점 : 김정혜(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강사)
14:30~14:50	<발표 2> • 인권위 진정사건을 통해 본 학교 성희롱 현황 : 이수연(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14:50~15:00	휴 식
15:00~16:20	<토 론> • 김성애 (부천공고 교사) • 백미원 (압구정고 교감) • 박현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기획부장)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16:20~16:5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6:50~17:00	• 마무리



# 차 례

## 발표

- 발표 1  
학교 성희롱 사건의 특성과 처리과정의 문제점 ..... 1  
김정혜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강사)
- 발표 2  
인권위 진정사건을 통해 본 학교 성희롱 현황 ..... 33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 토론

- 토론 1 김성애 (부천공고 교사) ..... 53
- 토론 2 백미원 (압구정고 교감) ..... 61
- 토론 3 박현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기획부장) ..... 67
- 토론 4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 77
- 토론 5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 85
- 토론 6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93

## 참고자료 학교 성희롱 관련 결정문

-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개선 정책권고 결정문 ..... 101
-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결정문 1 ..... 117
-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결정문 2 ..... 125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발표 1>

# 학교 성희롱 사건의 특성과 처리과정의 문제점

▣ 김정혜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강사)





# 학교 성희롱 사건의 특성과 처리과정의 문제점



■ 김정혜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강사)

## 1. 서론

2015년 여름, 서울 서대문구의 O고등학교에서 다수의 교사에 의한 성희롱<sup>1)</sup>이 학생들과 여교사들에 대하여 장기간 지속되었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피해자들과 교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가해가 중단되거나 적절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가해 교사들은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학교에 머물렀으며 성희롱은 지속되었다. 학생<sup>2)</sup>에 대한 성희롱은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강간 등 성폭력범죄 뿐 아니라 그 외에 성적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 역시 범죄를 구성하며, 미성년자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지속적으로 상향되어왔다.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책 역시 강화되어왔고, 최근에는 교사의 폭력 행위가 ‘학교폭력’의 개념 속으로 편입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규제 방안들은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가해가 지속되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의 발생 현황과 특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또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은 넓은 의미에서 강제추행 뿐 아니라 유사강간, 강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는 성희롱 사건의 다수는 강제추행으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성희롱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되, 맥락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와 구별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성희롱, 성폭력’ 등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이렇게 표기할 경우 ‘성폭력’은 성폭력 범죄를 의미한다.

2) 이 글에서 ‘학교’, ‘학생’은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대학교, 대학생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와 초중고등학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성 및 처리 절차를 살펴보고 좀 더 나은 사건 처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 2.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현황

성희롱 문제는 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성희롱 문제도 교사의 다른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에 비하여 학생의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소수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김혜선(1997)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을 경험한 중고생 비율이 33.7%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고,<sup>3)</sup> 김영혜 외(2001)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중고생은 24.2%이며 그 중 교직원에 의한 피해 경험은 7.8%였다.<sup>4)</sup> 송연숙(2002)에서는 조사 대상 고등학생의 68%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었는데 그 중 12.7%가 교사에 의한 것이었다.<sup>5)</sup>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외(2013)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교장, 교감 또는 교사의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응답자들은 ‘자주 있다’ 1.5%, ‘가끔 있다’ 4.0%, ‘별로 없다’ 22.2%, ‘전혀 없다’ 72.4%고 응답하였다.<sup>6)</sup>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거듭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 집단에서도 성희롱 피해 경험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노충래(2002)에서는 분석 대상 응답의 20.1%가 교사로부터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었는데, 여자 청소년은 30.3%, 남자 청소년은 8.9%가 교사로부터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성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sup>7)</sup>

- 
- 3) 김혜선, “교사·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여성외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토론회 자료집, 1997. 노충래, “청소년의 성희롱 피해 및 가해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4권, 2002, 37쪽에서 재인용.
  - 4) 2000년 부산, 경남 지역 중고생 47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다. 김영혜 외, “한국 청소년의 성희롱실태 및 유형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7권 제2호, 2001, 202쪽.
  - 5) 2002년 서울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다. 송연숙, 「청소년의 성희롱 피해경험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2, 42, 51쪽.
  - 6) 2013년 전국 초중고 학생 29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2013, 28쪽.
  - 7) 2002년 서울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에 대한 조사 결과 중 성희롱 피해 또는 가해 경험이 있는 189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자 청소년은 동성친구에 의한 피해 경험이 61.6%, 남자친구에 의한 피해

## 4\_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교사의 성범죄는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2015.6. 기간에 발생한 교사의 성범죄는 총 302건이다.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재직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39.7%로, 12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사에 의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다른 학교 학생이 피해자가 된 경우도 4.6%였다.<sup>8)</sup>

<표 1>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유형(2009~2015.6)

(n=302)

피해자 유형	재직학교 학생	일반인	재직학교 교원	타학교 학생
명	120	89	59	14
%	39.7	29.5	19.5	4.6

<표 2>를 보면, 교사 성범죄 사건 가해자의 직급으로는 교장이 8.7%, 교감이 4.7%, 평교사가 86.0%를 차지하였다.<sup>9)</sup> 전체 재직 교원 중 교장 및 교감의 비율이 각각 2.6%<sup>10)</sup>임을 감안하면, 관리자급의 가해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교사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직급(2009~2015.6)

(n=299)

직급	교장	교감	평교사	장학사
명	26	14	257	1
%	8.7	4.7	86.0	-

다음의 <표 3>은 2000년대 이후 판례 및 언론에 보도된 교사 성희롱 사건 중 일부 사례의 내용과 징계 및 판결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가 32.3%, 교사에 의한 피해가 30.3%인 반면, 남자 청소년은 동성친구에 의한 피해 경험이 71.1%, 여자친구에 의한 피해가 16.7%, 교사에 의한 피해가 8.9% 순이었다. 노충래, “청소년의 성희롱 피해 및 가해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02, 54쪽.

8) 연합뉴스, “민현주 “교사 성범죄 피해자 40%는 재직학교 제자””, 2015.8.6.

9) 연합뉴스, “민현주 “교사 성범죄 피해자 40%는 재직학교 제자””, 2015.8.6.

10) 교육부, 「2014년 교육통계연보」, 2014.

<표 3>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례

발생 시기	가해자	피해자	성희롱 내용	징계 및 판결
2002	초등학교 교장	초등학생 (3학년)	놀이터에서 노는 학생을 사택으로 데려와 놀게 하다가 피해자가 침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하자 원고의 엉덩이를 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음. 발찌를 한 피해자에게 예쁘다면서 발목을 문지름. 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어깨, 등, 엉덩이를 문지르고, 피해자를 사택으로 불러 손가락으로 가슴을 수회 누르고, 교장실에 온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문지름.	징계: 미상 판결: 손해배상 1000만원
2003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생 (6학년)	교실에서 학생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며 스쳐 지나가고, 산에서 동 학생의 가슴을 만지면서 스쳐 지나감.	징계: 미상 판결: 1심 징역 6월 집유 2년 (성희롱 및 상해), 2심 성희롱 무죄
2004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생 2명	예배시간에 예배에 참가하지 않은 두 여학생을 교실에서 번갈아 껴안는 등 추행하고 아프다며 울자 아픈 곳을 만져준다며 한 학생의 엉덩이를 수 분 동안 수십 차례 토닥거리며 만진 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짐.	징계: 해임 판결: 징계 정당
2005	초등학교 교사(담임)	초등학생 (12세)	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무릎에 앉게 하여 가슴을 만지고,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볼에 입을 맞추고, 춤다면서 손을 등에 집어넣음.	징계: 미상 판결: 벌금 2000만원
2005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생들	학생에게 '얼굴 민고 공부 안 하면 청량리 588밖에 더 가냐'고 말함. 뒤에서 다가가 볼에 얼굴 비비기 등.	징계: 감봉 3월 후 해임 처분 판결: 해임은 과중한 재량권 남용
2006~2008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생들(11세)	2년간 학생들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	징계: 미상 판결: 교사는 강제추행 유죄, 지방자치단체의 연대책임 인정
2008~2009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생	생활지도실에서 학생의 질에 손가락 넣거나 입에 성기를 넣는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위력에 의한 추행.	징계: 파면 판결: 징계 정당
2009	중학교 교장	중학생들	학생들에게 '데이트하자', '남자랑 갔지?', '얼마나 컸나 안아보자' 등 언어적 희롱, 엉덩이에 신체접촉.	징계: 해임 판결: 징계 정당
2012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생	체육교사가 학생(남)의 성기부분을 만지고 성기에 관하여 언급함.	징계: 미상 판결: 징역 1년6월 집유 3년 (성희롱 외 상해 등 포함)
2012	중학교 교사	중학생들	수업시간에 성관계 모습이 담긴 음란 동영상 3회에 걸쳐 수 초 간 재생함.	징계: 감봉 2월 판결: 징계 정당
2013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생 (16세)	학생을 차에 태워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들자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짐. 며칠 뒤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성폭행 미수.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으로 자퇴함.	징계: 미상 판결: 1심 징역 2년6월, 2심 징역 2년6월 집유 4년

6\_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발생 시기	가해자	피해자	성희롱 내용	징계 및 판결
2013	초등학교 교사	초등 학생들	학교 교실에서 학교 폭력 관련 상담을 한다며 학생(11세)을 불러 무릎에 앉히고 ‘브래지어 와이어는 유방압을 유발한다’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음. 그 외에 1년여간 학생 4명을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징계: 미상 판결: 징역 3년 집유 4년
2013	중학교 교사	중학생	담임반 여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다가 입을 맞추는 등 추행.	징계: 미상 판결: 벌금 1000만원
2014	고등학교 교사	고등 학생들	학생(17세)을 노래방에 데려가 어깨와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고 다음 날에도 노래방에 데려가 볼에 입을 맞추고 껴안으며 몸의 여러 부위를 만짐. 다른 학생들에게도 ‘내가 얼마나 좋아?’, ‘우리 사이 다시 시작?’, ‘너는 누구 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냄.	징계: 미상 판결: 징역 2년 집유 3년
2014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생	여학생을 껴안고 추태를 부림.	징계: 정직 3월
2014~2015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생 5명	학생들에게 ‘몸이 예쁘니 누드모델 하면 되겠다’, ‘섹시하다.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느냐’ 등의 말을 함.	징계: 정직 3월
2015	고등학교 교사	고등 학생들	수업시간에 ‘속옷 색깔이 뭐냐고 질문. 교사는 새학기 친구들 간 깊이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주장.	징계: 견책

대개의 사건은 남교사의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이며, 그 유형은 언어적 성희롱부터 강제추행, 강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교사의 성추행이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실형이 선고되는 예가 드물고, 대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준강제추행 등의 피해로 피해자가 자퇴한 사례에서도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2014)의 연구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상향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형은 높지 않으며 실형보다 집행유예형의 선고 비율이 높아졌음을 지적한 데서 보듯,<sup>11)</sup>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는 신체적 추행 행위가 파면, 해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편이고 그에 비하여 언어적 성희롱이나 음란물 상영 등의 행위는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 사례가 많지만, 신체적인 추행의 경우에도 정직에 그친 경우가 있다. 성범죄 가해

11)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판례 분석」, 2014, 97~9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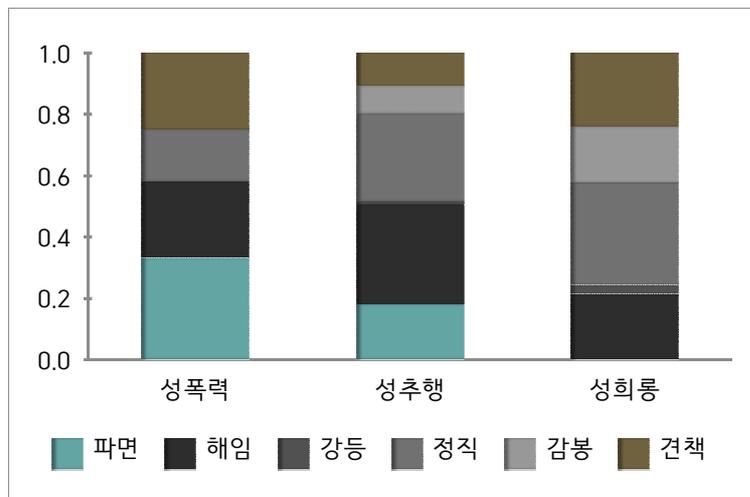
교사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에서와 같이 교사 성범죄 사건으로 파면, 해임된 경우는 44.2%였다. 25.5%는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27.7%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sup>12)</sup>

<표 4> 교사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징계 현황(2011~2015.6)

(n=231)

징계	파면, 해임	정직	경징계	당연퇴직
명	102	59	64	6
%	44.2	25.5	27.7	2.6

<그림 1>은 사건별로 징계의 정도를 구분한 것이다. 성폭력<sup>13)</sup> 사건에서 파면이 가장 많고, 성추행 사건은 그보다 다소 적으며 성희롱 사건은 가장 무거운 징계가 해임이었다. 성폭력 사건에서도 정직이나 견책 처분 사례가 있었는데, 그 중 징계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은 준강간 또는 미수 사건이었다.



12) 연합뉴스, “합의했고 전과 없다고...성폭력 교사 ‘숨방망이’ 처벌”, 2015.8.6.

13) 연구자가 입수한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 자료에는 징계사유 기재가 단순하고 사건마다 기재 방식이 달라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는 어려웠다.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은 성폭력과 성희롱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징계종류 항목에 ‘성추행’, ‘성폭력’, ‘강간’으로 표기된 행위는 성희롱과 구분하여 ‘성폭력’으로 분류하였으나 견책 처분 중 2건은 강간 사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견책 처분의 성폭력 사건 3건은 ‘징계사유 또는 범죄사실’ 항목에 각각 ‘품위유지의무위반’, ‘성폭력’,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준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8\_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표 5>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도를 연도별로 비교한 것이다.<sup>14)15)</sup> 2011년 이후 당연퇴직을 포함하여 정직, 해임, 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72.3%이다. 2015년 상반기의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35명 중 29명이 중징계를 받아 가해자의 82.9%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비하면 중징계의 비율이 16.2% 상승한 것이다.

<표 5> 교사 성범죄 사건의 연도별 중징계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상반기	계
성범죄 사건	42	60	54	40	35	231
중징계	28	39	43	28	29	167
중징계 비율(%)	66.7	65.0	79.6	70.0	82.9	72.3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07명 중에서는 파면이 17명(15.9%), 해임이 36명(33.6%), 당연퇴직이 4명이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징계의 정도가 좀 더 낮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24명 중 68.5%에 해당하는 85명이 경징계를 받아,<sup>16)</sup>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교직에 머무를 가능성이 더 높았다.

### 3. 서대문구 O고교 성희롱 사건 경과

올 여름 교사의 성희롱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된 서대문구 O고등학교 성희롱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기로 한다.<sup>17)</sup> 약 2년에 걸쳐 여교사와 학생들을

14) 국민일보, “모든 교원 이달 중 성폭력 예방교육”, 2015.8.5.

15) 경향신문, “성범죄 교사 급증... 정부는 처벌 위주 뒷북만”, 2015.8.4.

16) 뉴스메이커, “서울 ‘성추행’ 고등학교 파문”, 2015.9.7.

17) 사건 경과에 대한 이하의 내용은 이 사건을 보도한 일간지 기사를 종합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의 사례로서 이 사안을 살펴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6>의 성희롱 사건 내용은 한국일보의 다음 기사들을 참조하였다. “한 학교 교사 5명이 꼬리문 성추문”, 2015.7.29.; “사상 초유 성추문... 교육당국은 사실상 수수방관”,

대상으로 발생한 O고등학교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교사는 교장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 7. ~ 2015. 7. 기간에 발생한 성희롱 피해에 대하여 여교사 5명, 학생 34명이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언론에서는 수업 시간에 발생한 성희롱으로 인한 집단적 피해를 환산할 경우 130명 정도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하였다.<sup>18)</sup> <표 6>은 가해자별로 제기된 성희롱 피해 내용이다.

<표 6> 서울 서대문구 O고등학교 성희롱 사건의 내용

가해자	성희롱 피해 주장 내용
A (교장)	회식자리에서 손을 잡는 등 여교사의 몸을 만지거나 ‘너 C컵이냐’고 물음. 회식자리에서 기혼 여교사에게 (남편 말고)애인 있느냐?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짐. 대답하지 않자 계속해서 답을 채근함.
B (교무부장, 국어교사)	수업 중 학생의 가슴을 만짐. 회식 중 노래방에서 여교사에게 블루스를 추자며 당겨 옷이 뜯어지고 노래를 부르는 도중 뒤에서 안고 가슴을 움켜쥐.
C (입시지도 특별반 담당교사, 물리교사)	1, 2학년 여학생 6명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과학실이나 과학교무실에서 여학생들의 허리에 손을 두르거나 등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주무름. 옷 속에 손을 넣어 맨살, 가슴 등을 만지려 함.
D (성고충처리위원회 책임교사, 미술교사)	미술실에서 학생의 허벅지와 팔, 가슴 등을 만짐. 최소 2명 이상의 여학생을 2014년 초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
E (2학년 영어교사)	수업시간에 여학생에게 ‘원조 교제 할래?’ 라고 물음. 여학생들에게 ‘황진이’, ‘춘향이’ 등의 이름을 붙이거나 연예인과 성관계하는 상상을 수업시간에 들려줌. 여교사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가해자들은 학생들뿐 아니라 주로 20대 초임 여교사, 기간제 여교사들을 상대로 언어적 성희롱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수차례에 걸쳐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교단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이 침묵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학생들은 B교사가 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여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담임교사가 이를 교장에게 보고하였지만 교장은 이를 성폭력 범죄로 신고하거나 징계 처리를 하지 않고 다음 날 남교사들을 불러 여학생들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며 주의를 주는 선에서 그쳤다.<sup>19)</sup> B교사

2015.7.30.; “여교사의 절규 "성추행 목살... 학교도 아니다"”, 2015.7.31.; “수업 중 여제자에 “원조교제 할래?” ...성추문 고교 실상 조사할수록 경악”, 2015.8.3.; “성추행 동영상 알렸지만 ‘제 발 저린’ 교장이 목살”, 2015.8.31.

18) 한국일보, “성추행 동영상 알렸지만 ‘제 발 저린’ 교장이 목살”, 2015.8.31.

는 회식 중 다른 여교사를 강제추행하기도 하였으나, 1년 동안 휴가,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하다가 아무런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 다른 학교로 진출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sup>20)</sup> C교사 역시 성희롱이 학교장에게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제를 받지 않았다. 추행 문제로 인하여 교사들이 C교사의 격리를 요구하였지만, 교장은 ‘아직 고발되지 않았고 범죄가 입증되지도 않았다’면서 성추행이 문제된 이후인 2015년 초에 C교사를 3학년 학년 부장으로 내정하였다고 한다. 성추행 사건이 2015. 2. 경찰에 고소된 이후야 C교사의 보직이 박탈되었는데, 이 때에도 교장은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교육청 보고 없이 C교사를 1학년 담당으로 보냈다. 그 사이 C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무죄 탄원서를 받아냈고, 이에 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더 이상 딸을 이 학교에 보낼 수 없다’며 전학을 시키게 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졌다. 그제서야 교장은 C교사를 병가를 보내어 격리하였다.<sup>21)</sup> C교사는 직위해제 기간에도 동호회 활동을 이유로 하여 학교에 출입하였다.<sup>22)</sup>

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어렵게 한 또 하나의 요인은 가해자들의 학교 내 지위이다. 다른 가해 교사들을 징계하여야 하는 교장이 이미 일상적으로 여교사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을 저지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교장을 포함한 가해자 4명은 학교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4명의 교사는 모두 학교 설립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영향력을 갖게 된 개설요원들로서,<sup>23)</sup> B교사는 교무부장이었고 C교사는 입시지도 특별반 담당 교사였다. C교사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진학설명회의 대표 강사이기도 해서 학교 내에서 입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4)</sup> D교사는 학교 내 성희롱 문제의 조사를 담당하여야 할 성고충처리위원회 책임교사였다. D교사는 2014년에도 여학생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학교의 남교사 전체가 성인지 교육을 받기도 하였지만 성고충처리위원회 책임교사로 임명되었다.<sup>25)</sup> 이후 성희롱 혐의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박탈되지 않았다. 몇몇 여교사들이 C, D, E 교사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교장은

19) 한국일보, “성추행 동영상 알렸지만 ‘제 발 저린’ 교장이 목살”, 2015.8.31.

20) 한국일보, “‘개교 공신’ 완장이 성범죄 불렀다”, 2015.8.5.

21) 한국일보, “‘개교 공신’ 완장이 성범죄 불렀다”, 2015.8.5.

22) SBS 뉴스, “‘헬-학교’의 비극...‘일상적 성추행, 피기영화 세트장 같았다’”, 2015.8.6.

23) 한국일보, “‘개교 공신’ 완장이 성범죄 불렀다”, 2015.8.5.

24) SBS 뉴스, “‘헬-학교’의 비극...‘일상적 성추행, 피기영화 세트장 같았다’”, 2015.8.6.

25) SBS 뉴스, “‘헬-학교’의 비극...‘일상적 성추행, 피기영화 세트장 같았다’”, 2015.8.6.

성고충처리위원회에서 D교사 문제를 처리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성희롱 문제에 대응하여 할 위치에 있는 교사들이 성희롱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도, 징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성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D교사였고, 위원 명단에 올랐지만 자신이 위원인 줄 모르는 교사도 있었다.<sup>26)</sup>

다수의 가해자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의 성희롱 사건이 불거지자 서울시 교육청은 2015. 8. 6.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sup>27)</sup> O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는 2015. 8. 31. 발표되었으며 가해 교사 5명에 대한 징계 방침이 예고되었다.<sup>28)</sup>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은 ① 해당 학교 학생·교사·학부모에 대한 치유 지원과 학교운영의 조기 정상화, ② 성범죄 교원에 대한 강력한 격리 조치 및 징계, ③ 학교 내 권위주의 문화의 척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sup>29)</sup> 뒤이어 2015. 8. 13. 교육부는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교육부의 대책은 ① 성폭력 발생시 대응체제 강화, ② 성범죄 교원 교단 원천 배제, ③ 학교 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sup>30)</sup>

26) 한국일보, “여교사의 절규 “성추행 목살... 학교도 아니다””, 2015.7.31.

27) 뉴스메이커, “서울 ‘성추행’ 고등학교 파문”, 2015.9.7.

28) 한국일보, “성추행 동영상 알렸지만 ‘제 발 저린’ 교장이 목살”, 2015.8.31.

29)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대문구 O고등학교의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치유 지원, 대학입시 특별지원 등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둘째, 학교 성범죄 인지 즉시 특별감사 실시, 가해자는 즉시 직위해제하여 격리조치 후 절차에 따라 징계, 성범죄 연루 교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단에서 배제, 임용 단계에서부터 연수 등을 통하여 성범죄 예방조치를 강화, 셋째, 성범죄 신고처리 시스템 일원화 관리, 학생인권옹호관에 전담책임자를 배치하여 신고 및 처리의 특별관리,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성범죄 신고 체계 구축 및 스마트폰 앱 개발 보급, 넷째, 학교의 권위주의 문화와 가부장적인 성문화 개선을 위해 기존의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등 학교 민주화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학교 성고충상담위원회에 외부위원 의무 위촉, 성범죄 사안 교육청 신고 의무화, 다섯째, 이를 위하여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하는 특별대책기구를 서울시 교육청에 설치 운영. 서울특별시 교육청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 발표’”, 2015.8.6.

30)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 발생시 대응체제 강화 방안으로서, 학교 내 교원 성폭력 신고체계 구축, 교원 성폭력 사건 은폐, 축소 시 징계 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및 가해자 즉시 직위해제, 징계 처리 기간 단축, ② 성범죄 교원 교단 원천 배제 방안으로서, 성폭력 교원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전면 시행, 성폭력 경력자의 교원 자격 취득 제한 및 사후 교원 자격 박탈, 성비위로 인한 해임시 연금 삭감 추진, ③ 학교 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방안으로서 예비교원 및 재직교원의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성비위 징계교원의 재발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개학 후 전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 추진”, 2013.8.13.

## 12\_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 4. 성희롱 사건의 처리

### (1)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성희롱예방지침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자체 성희롱예방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의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률은 93.1%(2013년)로, 점검 대상 기관 중 입법부(100.0%)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sup>31)</sup> 자체 지침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을 주요 골격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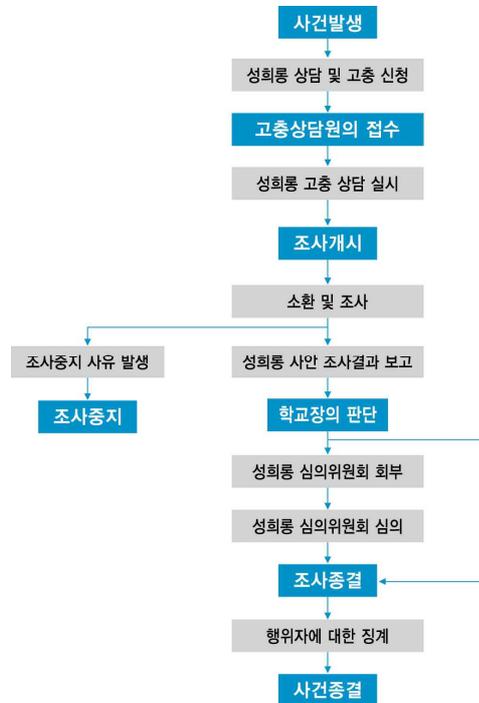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에 따르면 학교는 성희롱 예방 업무 및 성희롱 고충의 상담 및 처리를 위한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대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의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비율은 97.0%이며, 고충상담 전담창구 설치율은 96.8%로 대부분의 학교가 고충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해두고 있다.<sup>32)</sup>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임직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되 남성 및 여성을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고충상담창구에서는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 접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31) 장미혜 외,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여성가족부, 2014, 19쪽.

32) 장미혜 외,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여성가족부, 2014, 34~35쪽.

성희롱 사안의 심의를 위해서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데, 학교에서는 대개 교감이 위원장이 된다.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은 특정 성이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할 것,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비율은 96.2%로 대부분의 학교가 고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55.6%, 중·고등 공민학교는 49.6%가 여성이어서 상급 학교의 여성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다.<sup>33)</sup>

여성가족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림 2>은 학교의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이다.<sup>34)</sup>



<그림 2> 초중고등학교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

33) 장미혜 외,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여성가족부, 2014, 39쪽

34) 이하의 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 및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은 여성가족부, 「201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2015, 188쪽 이하의 사건 처리 매뉴얼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학교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메일,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성희롱 고충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상담이 접수되면 피해자의 학부모에게 알린다. 피해 학생이 학부모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거나 학부모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또는 성희롱을 목인, 방조하는 등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이때 상담원은 비밀 보장 문제와 관련된 방침, 상담이나 문제 해결,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점 등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통하여 조사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하게 된다. 조사가 불필요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조사는 사건 접수 후 2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결과 보고서를 조사기록에 첨부하고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성희롱 심의위원회 또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학교장이 이를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는 종결되고 징계 절차로 들어가므로 성희롱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성희롱 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에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성희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성희롱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면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 약속 등의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청은 감사 부서의 성희롱 전담반에 사건을 배당하여 성희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 전환,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성희롱이 징계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생이 피해자인 성희롱 사건은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고 지속적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가해자 전보조치, 수업 교체 등 신속한 인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행위자와의 격리를 통하여 피해자의 심신안정, 비밀유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신고의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 및 학교의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4②)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행위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므로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7④)

## (3) 피해자 보호 및 대책 수립

성희롱은 학교폭력<sup>35)</sup>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교원은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동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위원은 5~10인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가 과반수여야 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①) 그 외에는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판사·검사·변호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기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①)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청이나 학교장의 요청,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 학교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또는 보고, 가해

35)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법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2012. 3. 21. 개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한편 학교폭력에는 성폭력과 성적 사이버폭력이 포함된다. 성폭력에는 성적 언행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성희롱이, 사이버폭력 중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정제영 외,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외, 2014, 7쪽.

학생의 협박이나 보복 사실의 신고 또는 보고가 있을 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②)<sup>36)</sup>

교사가 가해자인 사건에서는 교사의 징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문제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하며 7일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사건 담당 경찰이나 상담기관 상담원이 출석하여 대신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피해 학생 보호조치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기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①)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으로 인하여 출석을 하지 않는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기타 보호 조치에는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인도,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법원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등하교길의 동반 등이 포함된다.<sup>37)</sup>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기 전이라도 긴급한 보호의 필요가 있거나 피해 학생이 긴급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기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즉시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가해 교사의 징계 및 처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범죄

36)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전문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며,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등으로 학교장이 구성한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한다. 전담기구는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4)

37) 정제영 외,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외, 2014, 132쪽.

가 성립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아동 복지법>에 따른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sup>38)</sup>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성희롱한 때에는 기타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1/2까지 가중처벌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8)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진지한 행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sup>39)</sup>

<표 7>은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sup>40)</sup>이다. 성폭력 사안은 파면 또는 해임만이 가능하다. 성희롱 사안은 비위의 정도와 고의, 과실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징계의 범위가 넓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이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한 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때에는 견책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때를 제외하면 파면만이 가능하다. 성희롱에 대한 징계 기준은 기준 제정 이래로 거의 변화가 없지만 성폭력은 최근 몇 년 사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징계의 정도가 상향되었다. 현행 기준은 2015. 4. 9. 개정된 것인데 개정 전에는 표의 왼쪽부터 순서대로

38) 2000년 1월 개정에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던 당시에는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였다가 현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 것은 2014.1. 개정에서이다.

39)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도7787 판결.

40)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순이어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성인 대상 성폭력에는 징계계가 적용되었다.

<표 7> 교육공무원 징계기준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미성년자, 장애인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서울시교육청의 <법률위반 공무원 처리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구약식, 기소유예인 경우 징계계 의결 요구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치는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를 막론하고 징계계 의결을 요구하며, 공소권없음인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한다. 학교는 자체적으로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이 타 학교로 전출시에는 해당 사항을 전출 학교에 통보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인사업무에 반영하는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범죄의 동기, 정황, 고의 여부, 처리대상자의 평소 품행, 공직기여도,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감 적용하도록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 교육공무원이 훈장이나 포장,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때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등의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된 때에는 제외된다.(§4②)<sup>41)</sup>

41)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희롱이 추가된 것은 2013.2.28. 개정에서이다.

(5) 가해 교사의 자격 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학교를 운영하거나 학교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①) 위반시에는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폐쇄를 요구하거나 해당하는 사람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58)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를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56②), 학교장은 교사 또는 교사 채용 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56③) 교육부장관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학교를 운영하거나 학교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57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57③)

교사는 또한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임용 결격사유는 유지된다.(교육공무원법 §10의4) 또한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후 5년, 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 동안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33)

이에 따라 성범죄의 대상, 가해자가 받은 징계 또는 처벌의 정도, 행위의 종류 등에 따라서 임용 제한이 달라진다. 미성년자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이나 치료감호 집행 종료 또는 집행 유예·면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때에는 교사가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임용 결격사유가 된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 미만의 징계를 받은 교사로서 신고, 고소, 고발되지 않아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 고소, 고발되었지만 선고유예 등 혐의없음 외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중에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복지법> 상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유죄가 확

정된 때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영구 박탈되지 않고, 형 집행 종료 후 10년, 파면 후 5년, 해임 후 3년이 경과하면 교사로 복귀가 가능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형 집행 종료 후 10년, 파면, 해임 후 각각 5년, 3년이 경과하면 복귀할 수 있다.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 교육하여야 하는 교직의 특성상 자격 제한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19대 국회에서만 8건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sup>42)</sup> 개정안들은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범죄 외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범죄 포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포함, <군형법>상의 성범죄 포함,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 사건 또는 치료감호 선고 사건을 포함, 강등, 정직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할 것 등을 규정함으로써, 임용 결격사유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한편 현행 규정은 교사가 성폭행 문제로 징계를 받은 때에 승진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강등 및 정직의 경우는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 내에 승진 임용될 수 없다.(교육공무원임용령 §16①)

## 5. 문제점 및 대안의 모색

학교 내 성희롱에 대하여 성범죄 가해 이력이 있는 교사의 영구적 퇴출, 처벌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징계 기준은 계속해서 상향되어 왔으며, 실제적인 문제는 오히려 현행 규정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성희롱이 묵인, 은폐되어 성희롱이 학교 내에서 문제로 여겨지지 않은 채 만연해 있거나, 피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를 느끼면서도 이를

42) 다음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으로서 임용결격사유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방안을 포함한 개정안이다. 괄호 안은 의안번호이다. 정청래 의원안(1916556), 안민석 의원안(1914810), 박홍근 의원안(1914462), 김광진 의원안(1913913), 주호영 의원안(1912738), 이노근 의원안(1911476), 박명재 의원안(1909809), 정부안(1914580)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 사건의 처리에서 문제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보도록 한다.

### (1) 외부 인사의 절차 참여

현행 사건 처리 절차는 학교 내에서 사건을 은폐하기 쉬운 구조라 할 수 있다.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의 경우 사건을 접수한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학교장이 사건을 성희롱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후의 조치는 교장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보직교사들로 구성되어 사실상 학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은 피해자가 근무 조건이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장 동료와 상담하는 것에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거나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담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취해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권장 사항일 뿐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교사로서만 구성된다. 교사 외의 외부 위원 참여가 요구되는 조직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뿐인데, 학부모대표를 위원의 과반수로 위촉하여야 하며 법조인, 경찰, 의사,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학부모대표 외에는 학교 내의 교사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 대표를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학부모는 학교에 자녀의 교육을 맡기고 있는 입장으로서 학교의 외부인이자 내부인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게 됨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외부 인사의 참여는 사건의 신고를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교사의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무 위반이 실제로 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사는 사건을 인지한 후 학교 내 보고 체계를 먼저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가 사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신고하기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내부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이 전혀 없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조사 과정에서 학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참여하는 것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더불어 사건이 학교 내에서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2) 사건 처리 기구에서 가해 교사의 배제 방안 마련

성희롱 고충상담원, 성희롱 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등 교사에 의한 성희롱 문제를 조사, 처리하는 기구에 가해 교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건 처리 절차에서 가해 교사의 참여를 배제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번 서대문구 O고등학교 사건에서도 성고충처리위원회의 책임교사가 주된 가해 교사 중 한 명이었고, 교장은 그가 가해 교사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고충처리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법관 본인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 재판을 할 수 없고,<sup>43)</sup> 그 외에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은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성희롱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교사 또한 가해 혐의를 받고 있거나 가해 교사로 지목된 교사와 직속의 상하 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 교내외 상담 및 신고 체계 구축 및 홍보

교사의 성희롱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상담 및 신고가 수월해져야 하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되고 학생들이 그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담임교사가 평소 성희롱에 관대하거나 학생들에게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던 등의 이유로 상담을 하기 어렵거나, 상담 이후 미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은 다른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어렵다. 교내에서

43) 형사재판에서 법관의 제척사유는 법관이 피해자인 때,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이다.(형사소송법 §17)

비밀 누설, 상담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가 우려되거나 사안이 적절히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될 때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밖의 상담 및 신고 체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금지되는 성희롱의 내용, 관련 담당자와 조직, 신고 방법 등이 담긴 포스터를 게시하거나 안내문을 학부모에게 보내도록 하는 것, 상담실, 보건실, 도서관 등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은 성희롱의 부당함과 신고 방법을 동시에 알리고 교사의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O고등학교 사건 이후 교육부 및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놓은 대책 방안 중 하나로 성범죄 신고 체계 구축이 예정된 바, 적절한 개선이 요청되며 각 학교에서도 온라인상의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4) 불명확한 사건 처리 절차의 개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은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면서 동시에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그래서 사건 처리 절차 역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와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가 이중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중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는 모호해 보인다.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른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는 성희롱 고충상담원에게 사건을 접수, 상담하고 성희롱 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게 되어 있고,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가해학생 징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의 경우 성희롱 사안에 특화된 상담기구 및 위원회가 상담 및 조사를 담당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는 대책 마련 및 피해 학생의 보호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학교 외부 인사 참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성희롱이면서 학교폭력인 경우는 어떤 절차를 따를 것인지가 모호하고, 그로 인하여 사안의 적절한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두 절차의 장점을 통합한 일원화된 방안이 요청된다 하겠다.

#### (5) 사건 처리 가이드의 보완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건 처리 가이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와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는 둘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이 주된 모델이 아니다. 각 학교의 성희롱 예방 지침을 통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는 ‘직장 내’ 성희롱, 즉 직원들 간의 성희롱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의 처리 절차를 사건 처리 매뉴얼에 담고 있기는 하지만 교사의 성희롱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 지침은 충분하지 않다. 그에 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중심으로 하며 동법에 따라 구성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역시 마찬가지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안을 다루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구법은 학교폭력을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하였다가 2012.3.21. 개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수정하면서 학생이 가해자가 아닌 때에도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개정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어서 교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고려한 개정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공동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피해 학생과 가해 교사가 다른 학교 소속인 경우의 공동 위원회 구성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교사에 의하여 발생한 학생 성희롱 사건은 학교 내에서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처리 가이드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6)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교사 격리 방안 마련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의 특성을 반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격리 문제이다. 권력 차이가 뚜렷한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사건 조사를 통한 교사의 징계 뿐 아니라 교사의 격리와 피해 학생의 보호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교사의 성희롱이 문제되었을 경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또는 피해자가 노출되거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가해 교사 또는 제3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성범죄의 인지 즉시 가해자를 직위해제하여 격리 조치하고 수업 참여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O고등학교 사건의 경우 가해

교사가 직위해제 기간에도 학교에 자유롭게 출입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죄 탄원서를 받아내기도 하여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위해제와 수업 참여 배제 뿐 아니라 조사 기간 동안 학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자 또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접근을 제한하며, 가해 교사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를 가중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요청된다.

#### (7) 사건 처리의 추가적 고려 요인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은 문제된 1건의 사안을 처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성희롱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없는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 하였을 때에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상담 및 해당 사건의 조사 외에 예컨대 해당 교사의 수업을 받는 모든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피해 학생 및 성희롱을 목격한 학생들에게는 피해의 회복이 필요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불이익을 입는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피해 학생은 가해 교사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로부터의 부정적 반응에 직면할 수 있고, 성희롱이 확인되어 교사가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당 교사로부터 수업 및 지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이후 학교 내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처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 사건의 처리는 단지 문제된 사안의 처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피해의 발견, 피해자의 피해 회복,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 성희롱에 대한 학교의 불관용 원칙 확인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8)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각급 학교의 학교별 고충상담원의 평균 인원수는 3.0명이다. 그 중 2.4명이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고충상담원의 교육 실시 비율은 59.7%로 낮은 편이어서,<sup>44)</sup> 교육의 확대와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학교 내 성희롱 사건의 최초 접수자로서 피해자를 상담하고 사건 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고충상담원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숙지하며 피해자 보호 등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원의 사건 처리 경험이 적은 경우 교육의 필요성은 더 크다. 그러므로 모든 고충상담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의 상담 및 조사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충상담원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의 경우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은 전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분, 시행된다. 교원의 경우 전문교육은 원격 교육연수로 진행되며, 심화교육은 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고충상담원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사이버선수학습을 병행한 1일 과정의 집합교육으로 구성된다.<sup>45)</sup> 2015년 교원 원격교육연수 대상은 660명으로 2014년 400명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고충상담원 교육 실시 비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교육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며, 원격 연수 방식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의 점검이 요청된다.

#### (9) 성희롱 예방 조치의 강화 및 학교 관리자 교육 과정 개설

학교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각급 학교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은 99.9%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간 교육 실시 횟수는 평균 1.9회이다.<sup>46)</sup> 직장 내 성희롱은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비판받아왔으나, 학교의 경우 종사자 참여율은 96.5~96.8%, 고위직 참여율은 97.2~98.1%, 기관장 참여율은 99.0%로 관리자급의 교육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다.<sup>47)</sup> 그러나 높아진 참여율에 비하여 예방교육의 효과는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제로 교육 대상자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성고충처리위원회 책임교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반복되었던 서대

44) 장미혜 외,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여성가족부, 2014, 34쪽 이하.

45) 여성가족부, 「201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2015, 123쪽 이하.

46) 장미혜 외,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여성가족부, 2014, 25~26쪽.

47) 장미혜 외,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여성가족부, 2014, 28~32쪽.

문구 O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13년, 2014년 두 해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 직원 이수율이 100%이고 기관장은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비정규직, 인턴 등도 100%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예방교육이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고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이나 대단위 집합교육보다 소규모 참여형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 권장되며, 학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를 위한 교육 과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것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 관리자는 성희롱 예방 정책 마련과 사건의 처리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성희롱에 대한 관리자의 태도와 의지가 학교 내의 성희롱에 대한 정책과 태도, 교사 및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sup>48)</sup> 따라서 관리자는 다른 교사들과 같은 내용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교육 내용이 별도로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sup>49)</sup> 한편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등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률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여성가족부는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을 두고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실적을 입력하게 하고 있어서, 허위 입력의 가능성이 있어 신뢰도가 낮다는 비판이다.<sup>50)</sup>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현장점검 등 별도의 이행점검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는 성희롱 예방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을 추행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판례에서, 가해자는 사건 전에 이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법원은 연간 2회에 걸쳐 1~2시간의 강연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것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예방교육 외에도 “교사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심층적인 인성검사나 면담 등을 통한 교원적격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에 대한 성희롱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교사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전문가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교원에 대하여는 최소한 40시간 이상의 개인 상담을 포함한 특별연수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에 대한 성추행을 사전에 방지할 효과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sup>51)</sup> 학교에서도

48) Catherine Hill at al., Crossing the Line: Sexual Harassment at School, AAUW, 2011, p.30.

49) 이미경 외, 「공직교육 프로그램 분석: 성인지 교육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신경림 의원실, 2013, 98쪽.

50) 장미혜 외,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여성가족부, 2014, 399쪽.

51) 광주지방법원 2009.1.22. 선고, 2008가합2136 판결.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실시 외에 개별 교사의 성희롱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집합교육이 아닌 개별적 상담 및 연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10)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조사의 필요성

지금까지 성희롱 문제는 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로 인하여 관련 법령이나 가이드라인 역시 직장 내 성희롱을 기준으로 제정되어 있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변변한 조사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의 발생 실태와 유형, 학생들의 대응 방법과 한계, 실제 사건의 처리 과정, 사건 은폐의 원인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예방 대책 마련 및 사건 처리 절차의 보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발표 2>

# 인권위 진정사건을 통해 본 학교 성희롱 현황

▣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 인권위 진정을 통해 본 학교 성희롱 현황과 개선방안

## - 교사에 의한 학생 피해를 중심으로 -



■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 1. 들어가며

#### ▶ 1. 고교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고교 교사(40대)가 고3이었던 여학생 2인을 자율학습을 지도하다는 명목으로 주말에 나오도록 유도하여 무릎에 앉히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더듬었음. 사건은 작년에 발생했으나 피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자가 졸업한 이후에 사건 처리를 원해, 올 3월 학생이 졸업한 직후 교육청에 보고되었고, 교육청은 파면조치함. 가해 교사가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 ▶ 2. 고교 교사의 여학생 성희롱

50대 교사가 학교 밖에서 술을 마시고 여학생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 앞에 쓰러져 있어 학생이 이를 보고 도와주려하는 상황에서, 가해 교사가 강제로 손을 짚지키고 데려가서 “너랑 자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됨. 가해교사는 해임처분됨.

#### ▶ 3. 고교 교사의 여학생 성희롱

고교 교사가 회식 중 기숙사에 있던 여학생에게 전화를 하여 기숙사에 이야기하여 외박쓰고 나오라며 “너랑 자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문자도 보냄.

추후 가해 교사는 술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실수였다 라고 변명하였으나 본인이 문자를 지운 것은 인정함. 교육청 조사 결과 피해 학생에게 보낸 문자와 전화 4통화를 한 것이 확인됨. 교육청은 가해교사를 파면처분함.

#### ▶ 4. 고교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올 봄, 담임교사가 학교의 청소도구 보관 창고에서 담임반 여학생의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만지고 자신의 승용차로 여학생을 데려가 성추행하려고 하였음. 피해 학생은 당시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여름 방학이 끝나갈 무렵 여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여 부모가 캐 물으니 위 피해내용을 이야기 하여 부모가 경찰에 신고함.

위 사례들은 최근 실제로 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여학생 성희롱, 성추행 사건들임. 대부분 해당 교육청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에도 고소가 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사건들이지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사건들 이외 얼마나 더 많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피해자가 존재하는 지 그 현황이 본격적으로 조사되거나 파악된 것이 거의 없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이라는 개념과 용어가 정립된 계기는 1993년 서울대 화학과 신교수에 의한 조교 성희롱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되면서 부터였음. 성희롱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와 소송이 시작된 곳이 다른 곳도 아닌 지식의 전당이자 배움의 공동체로 여겨지는 학교였다는 것이 아이러니함.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나 성희롱에 대하여는 법, 제도와 예방 체계가 상당 부분 정립되어 있다고 자위하고 있던 중, 최근 서울 A공립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에 의한 집단적인 성희롱 사건에 우리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였음. 중등학교도 더 이상 성희롱의 안전지대, 무풍지대가 아니었던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미쳐 눈을 돌리지 않았던 사각지대였던 것임.

초·중·고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다양한 관계와 맥락에서 복잡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 중 가장 드러내기 어려우면서도 피해자에게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

기고 학습권이 침해되는 유형은 A공립학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사에 의해 행해지는 학생 성희롱 사건임.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어떠한 특성과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논의해 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 중의 하나일 것임.

이 글에서는 인권위의 설립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진정 사건 현황과 진정사례 등을 살펴보고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살펴보고자 함.

## 2. 관련 규정 및 조치사항의 종류

###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관련 조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성희롱 행위자 요건 :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기업 사용자, 민간기업 근로자, 민간단체 대표, 민간단체 근로자

→ 공공기관의 종류 :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 성희롱 피해자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기업 근로자,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 **학생**, 민원인 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교수, 교사에 의한 학생, 교직원 성희롱은 조사대상이나 학생 간, 학생에 의한 교수, 교사 성희롱은 조사대상이 아님.

## 나. 성희롱 사건 관련 조치사항의 종류

- 권고 : 조사 후 성희롱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성희롱 행위자에게 △특별 인권교육 수강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행위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전보 등 인사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권고함.
- 합의종결 :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합의의사가 있을 때 진정인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당사자 합의로 사건 종결. 합의의 내용에는 △사과, △손해배상, △인권교육수강, △재발방지조치 마련, △행위자 사직, △행위자 부서이동 등이 있음.
- 조사중해결 :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사과 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행위자 소속기관에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 해고 등 인사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인이 제기한 문제가 자진 시정 또는 원만히 해결되어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 등
- 조정 : 인권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차별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음.

## 3. 학교 성희롱 진정 실태 및 주요 사례

### 가. 학교 성희롱 진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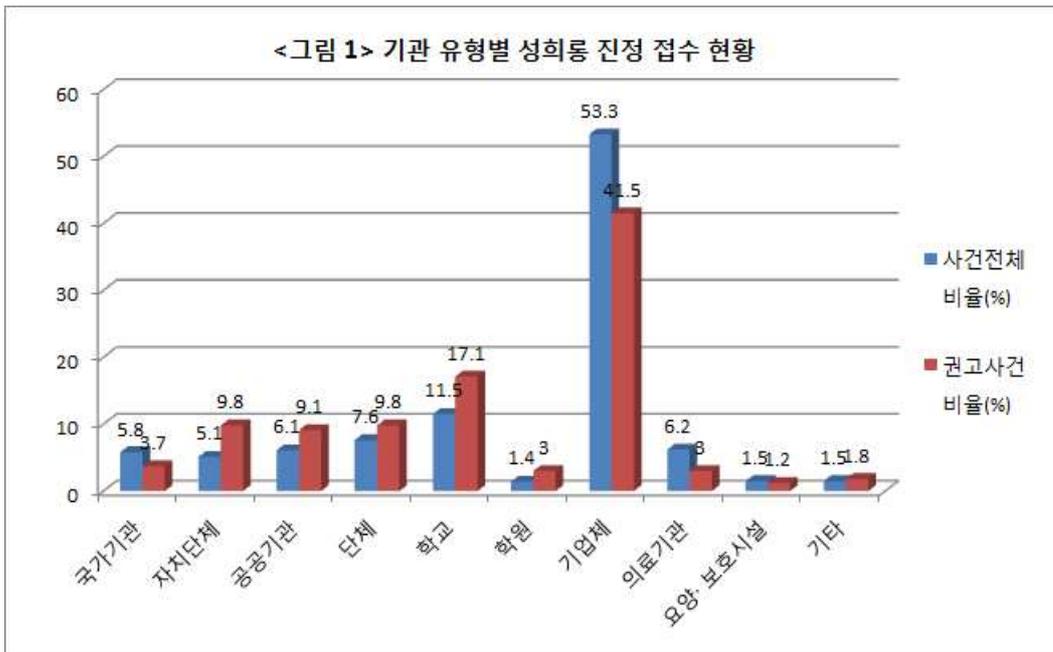
인권위 설립 초기인 2001년 11월 25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전체 성희롱 진정 사건 중 학교 관련 진정건수, 권고결정 건수 중 학교 사건 비율 등은 아래 <표 1>과 같음. 여기서의 학교는 초·중·고·대학교를 모두 포함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전체 학교 관련 성희롱 진정 중 초·중·고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진정 비율은 약 47% 정도로 파악됨. 초중고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진정 건 중 본 분석대상인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진정은 약 25% 정도임. 그 외 75%의 진정은 교사, 교직원 등에 의한 교사, 직원 등의 성희롱 사건들임.

학교 현장이 학생에게는 학교, 직원에게는 직장이므로 행위자/피해자의 관계 유형도 교사에 의한 학생 사건, 교직원 상호 간, 학생 상호 간,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사건 등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학교 관련 성희롱 진정 중 교사 간 진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학생이 행위자일 경우에는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접수된 사례는 없으며 학생 간 사건이 1건 접수된 적은 있음.

<표 1> 기관 유형별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2001.11.25 ~ 2015.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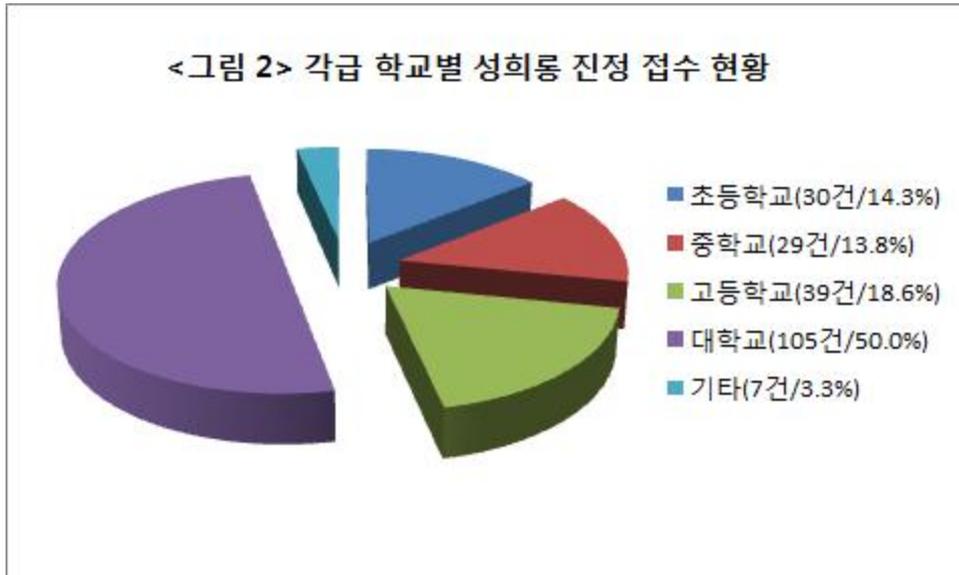
구분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학교	학원	기업체	의료기관	요양·보호시설	기타	계
사건 전체	건수	106	94	112	139	210	26	972	112	27	27	1,825
	비율(%)	5.8	5.1	6.1	7.6	11.5	1.4	53.3	6.2	1.5	1.5	100
권고 사건	건수	6	16	15	16	28	5	68	5	2	3	164
	비율(%)	3.7	9.8	9.1	9.8	17.1	3.0	41.5	3.0	1.2	1.8	100



<표 2> 각급 학교별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2001.11.25 ~ 2015.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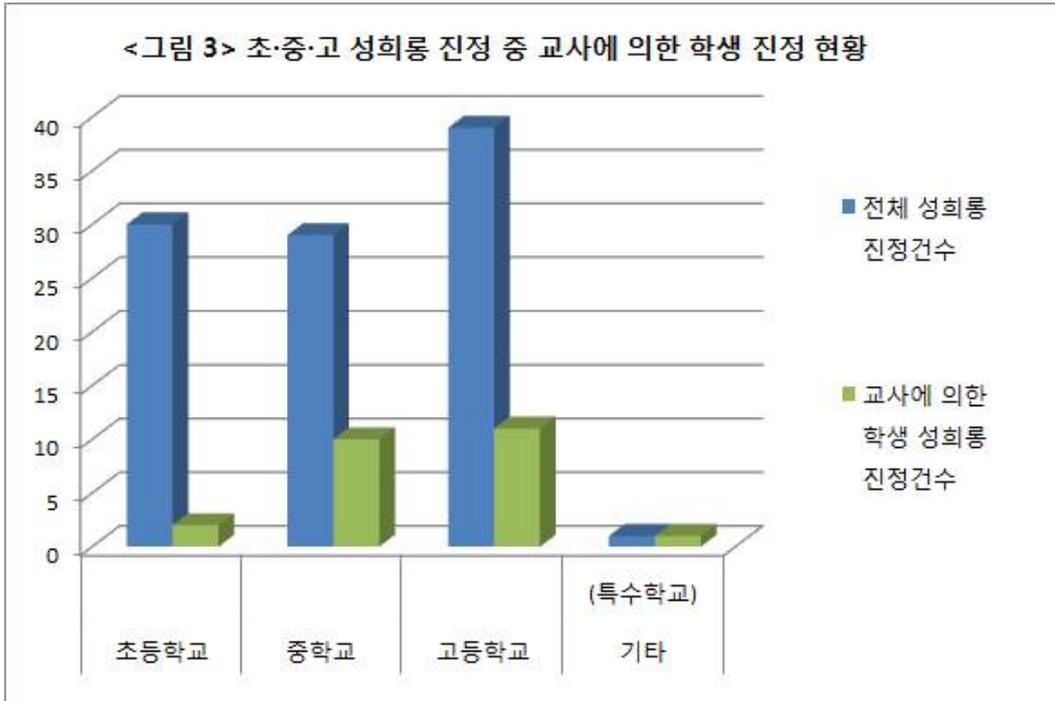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계
건수	30	29	39	105	7	210
비율(%)	14.3	13.8	18.6	50.0	3.3	100



<표 3> 초·중·고 성희롱 진정 중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진정사건 현황

(2001.11.25 ~ 2015.06.30)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특수학교)	계
초중고 전체 성희롱 진정건수	30	29	39	1	99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진정건수	2	10	11	1	24
비율(%)	8.3	41.8	45.8	4.1	100



## 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주요 진정 사례

### 1) 권고 결정례

#### 사례 1

##### ○ 중학교 교장의 여학생들 성희롱(10진정174)

피해자들은 00중학교 학생들이고 진정인은 상담교사임. 교장인 피진정인은 2009. 4. 수학여행 중 버스 안에서 피해자 1에게 ‘백화점에서 옷 한 벌 해줄 테니 남아서 데이트하자.’라고 말하고, 2009. 6.경 가출했던 피해자 2에게 ‘너 가슴 크다, 모텔 갔지? 남자랑 갔지? 어땠어?’라고 말하였으며, 2009. 8.경 피진정인에게 인사하는 피해자 3의 팔뚝과 엉덩이를 쓰다듬고, 2009. 11.경 교장실을 청소하던 피해자 4에게 ‘얼마나 컸나 안아보자.’라는 등의 언동을 함. 이에 대하여 2010. 7.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수강을 권고, 00교육청에는 피진정인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함. 00교육청에서는 피진정인의 성희롱과 학교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2010. 7. 해임 조치함.(2010.7)

## 사례 2

### ○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등(10진정3289)

피해자들은 2008년부터 00학교의 교사인 피진정인이 담임을 맡았던 3학년 1반의 학생들이고 진정인은 특수교육보조인으로, 피진정인은 학교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남학생 바지 위로 성기를 건드리거나, 국어수업 중 ‘고’자가 나오면 ‘고추’, ‘자’자가 나오면 ‘자지’라고 가르치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함. 또한 학생의 머리를 뺑망치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지적 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본인을 “장동건 오빠, 장동건 형아”로 부르게 하는 등 특수학급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음. 이에 대하여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함.(2010.12)

## 2) 합의종결 사례

## 사례 3

### ○ 중학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11진정1479)

2010. 11. 20. 피해자가 미술실 온풍기 앞에 앉아 있는데 미술교사인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년 왜 명찰이 없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눌렀음.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는 2011. 3. 2. 부터 3. 21. 현재까지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바 1년간의 학업 유예, 피진정인의 사과 및 손해배상을 원함.

→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2010. 12. 피해자에 대한 명찰 지도과정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합의 종결됨(2011.4).

## 3) 조사중해결 등 각하 사례

## 사례 4

### ○ 고교 교장의 학생 성희롱 (14진정3077)

진정인은 00고교 교사임. 2013. 10. 학교에서 교장이 1학년 여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아침 교문지도 당시 피해학생이 지각을 했는데 피진정인이 ‘치마 벗고 엉덩이 한번 맞으면 봐주겠다.’라고 말해 피해학생은 성적 수치심을 심하게 느꼈다고 함. 피해학생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사과만 들었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진정함.

→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 아버지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 각하 종결됨. (2014.11.)

**사례 5**

○ **고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 (13진정7736)**

진정인의 딸인 피해자는 00고교 1학년이던 2006. 5.~12.까지 당시 00고교 교사였던 피진정인으로 부터 승용차 안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최근 피해자의 고백으로 알게 되었음. 2013. 8. 00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나 피진정인이 여전히 00고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더라도 학생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교직을 박탈하거나 출근을 못하게 해주기 바란다며 2013.10. 진정함.

→ 조사 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각하 종결됨(2013.10)

**사례 6**

○ **여중 교사의 특수반 학생 성희롱 (13진정6028)**

피해자는 진정인의 딸로 지적장애 3급이며, 피진정인은 00여중에 재직 중인 교사임. 진정인은 2013. 4. 말경부터 피해자가 찻찻하다며 속옷을 자주 갈아입고 잠을 잘 못 잘 뿐만 아니라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미식거린다고 얘기하여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2013. 6. 7. 학교 강당에서 피해자가 피진정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2013. 7. 진정함.

→ 2013. 6. 14. 교감이 인권위에 진정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00지방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하였고, 2013. 7. 15. 00지방경찰청은 00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건이라 각하 종결됨 (2013.8).

**사례 7**

○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13진정107)**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만 10세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수 명의 초등학생이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4개월에 걸쳐 성기를 맞는 등 성추행을 당하고 장구채, 회초리, 자석 등으로 체벌을 당했음. 이에 대해 00경찰서에서 조사하였고 00지검은 체벌에 대해서만 구약식 벌금 100만원에 기소하였음. 이에 피해자가 당한 성추행에 대한 조사를 바란다며 진정함.

→ 위원회가 조사해 보니 00지검에서 성추행 건에 대하여 수사 중이었음. 따라서 각하 종결됨 (2013.7.)

**사례 8**

○ **중학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13진정4016)**

진정인은 00여중 2학년 학생이고 추가 피해자도 같은 학년인데, 2013. 5. 30. 교무실 앞에서 학생 주임이 진정인의 가슴 옆을 치더니 ‘노브라네?’라고 하고 담임선생님에게 ‘애 노브라예요’라고 하면서 교무실에서 망신을 주었고, 담임선생님은 진정인의 등을 만져보면서 ‘진짜 안했네?’ 라고 하였고, 옆에 있는 여학생의 등을 만지면서 ‘안 입었네’ 라고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며 진정함.

→ 이후 진정인이 일부 양보를 하고 원하는 바의 절반 정도를 얻어 해결되었다면서 진정을 취하함(2013.6.)

사례 9

○ **고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13진정3655)**

진정인의 딸인 피해자는 00고교에 재학 중임. 2013. 5. 14. 운동장 스탠드에 피해자 등 3명의 여학생들이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피진정인과 말을 하던 도중 한 학생이 "선생님 배 나오셨네요. 체육 선생님이랑 친해지세요. 그리고 운동해야지"하니 피진정인이 "그럼 운동해야하고, (손으로 모양을 그리며)여자들도 가슴 크게 하려면 운동해야지"라고 함. 그리고는 당황한 아이들의 얼굴과 가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피해자의 머리를 후려치면서 "여자는 가슴만 크면 안돼. 모양이 이뻐야지, 가슴 모양이 이뻐야 된다고"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수치스러워 울었다고 2013. 5. 20. 진정함.

→ 이후 진정인이 '피진정인이 아이들에게 공개사과하고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등 원만히 해결되었다'며 진정을 취하함(2013.6.)

사례 10

○ **고교 교사의 남학생 성희롱 (13진정2667)**

진정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2013. 4. 초 조희시간에 피진정 교사에게 성기를 잡히고, 성적 인 욕설을 듣는 등 성희롱을 당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바란다고 2013. 4. 16. 진정하였다가 피진정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2013. 4. 18. 진정을 취하함.

사례 11

○ **고교 교사의 남학생 성희롱 (13진정14)**

피해자는 고등학생이며, 진정인은 피해자의 학교 선배임. 2012. 5.말경 해외로 체험학습을 갔을 때 여교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손을 잡아주면 5달러를 주겠다. 뽀뽀를 해주면 10달러를 주겠다."라고 하였고, 1학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기 운운하는 말을 하여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음.

→ 인권위가 교사들, 학생들, 현지가이드, 수업내용과 자료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였으나 성희롱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2013.6)

사례 12

○ **체육교 감독의 학생선수 성희롱 (12진정6003)**

레슬링부 감독인 피진정인은 운동할 때 남자선수는 안 가르치고 여자선수만 가르치면서 손으로 여자선수의 가슴을 만질 때가 있고, 자신의 생식기를 선배언니 허벅지에 비볐으며, 진정인을 가르치면서 처음엔 어깨에 손을 올리다가 점점 허벅지 위쪽에 대기도 하였고, 7월 평창 레슬링 시험에서는 잘하라는 식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쳤음. 성추행 당하면서 운동하기 싫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싶으니 피진정인을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고 진정함.

→ 이후 진정인이 피진정인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진정을 취하함. 위원회가 학교 상황을 파악한 결과 피진정학교에서는 체육학교 특성을 고려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여학생 전담 코치를 두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따라서 진정 취하로 사건은 종결하나 해당 학교에 재발방지 노력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냄.(2012.11.)

**사례 13**

○ **중학교 배구부 감독의 학생선수 성희롱 (12진정5073)**

00여중 배구부 감독이 4, 5월경 피해자 1(2학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고, 6월경 피해자 2(3학년)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여 이를 교장선생님에게 말했으나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감독을 두둔함. 다른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있을 것 같으니 조사해 달라고 진정하였으나, 피진정인의 선수 성추행과 관련하여 경찰이 수사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진정을 취하 함 (2012.10.)

**사례 14**

○ **중학교 교사의 성희롱과 욕설 등 (11진정3413)**

피해자는 진정인의 딸로 00중학교에 다니는데 교사로부터 성희롱 등을 당했음. 2011. 4. 21. 피해자 포함 3명의 학생이 반바지가 짧다는 이유로 학생부실로 불러갔으며 최00 교사(피진정인1)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며 질책했고, 피해자가 들추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들춰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노출되어 이에 항의하자 욕을 하였음. 또한 피진정인1은 피해자가 반바지 입을 모습을 증거로 남기겠다고 다른 교사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였음. 위 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이 학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무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5. 26. 교장이 피해자를 불러 '학생부장이 사과했고, 성추행이 아닌 학생지도이니 부모님께 말씀드려 잘 끝내라'고 압력을 행사, 이에 피해자가 '무슨 사과를 했냐'며 거부하였음. 이후 점심시간에 피해자와 다른 학생 2명이 운동화를 신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교감이 피해자만 적발하여 벌점을 주었음. 이는 교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행위임.

→ 이후 진정인이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였다'며 진정을 취하함.(2011. 11)

**사례 15**

○ **고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09진차1212)**

피해자는 0000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3학년 학생주임인 피진정인1(48세)은 2009. 7. 16. 피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 “남자랑 자고 싶으면 자위를 해라.” “야동을 보면서 혼자 하면 된다. 가슴을 만져주고 00를 만져주면 기분이 좋아진다.”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집에 가서 저녁에 해보고 그 느낌을 문자나 전화로 알려달라고 하였음. 또 상담을 종료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보자며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하체를 밀착시켰음. 이러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2(교장) 및 피진정인3(교감)과 학교 내 자체 조사를 담당한 피진정인4(학생부장)은 성희롱 사안을 적절히 조사하거나 대응하지 않았으며 지역상담소장이 00도교육청 및 인권위에 진정함.

→ 인권위가 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000교육청이 피진정인1의 행위가 언어적 성희롱이자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 피진정인2, 3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경고장을 발부함. 또한 피해자는 더 이상 인권위의 조사를 원하지 않아 인권위는 기각으로 종결함(2010.4.)

사례 16

○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성폭력 (09진차1356)

00초교 교사인 피진정인은 진정인 딸의 학교 담임으로 2009. 9. 말경 피해자를 교재연구실로 데려가 눈을 감긴 후 성추행을 함.

→ 진정인이 진정을 제기하기 전 2009. 10. 30. 동일한 내용을 경찰에 고소하여 00경찰서 및 00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임이 확인되어 각하 종결됨(2009.12)

사례 17

○ 고교 교감의 학생 성희롱 (09진차1203)

새로 부임한 피진정인이 여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뒷머리를 쓰다듬고, 가슴 근처에까지 손을 가져가거나 손가락으로 쓰다듬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하니 시정을 바란다면 진정함.

→ 조사가관이 조사 진행을 위해 수차례 진정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이메일을 보내자 진정인이 답신에서 취하 의사를 밝혀 종결됨.(2009.10.)

사례 18

○ 고교 교사의 여학생들 성희롱 (08진차239)

2007년경 00여고 이00, 김00 교사는 체벌 시 피해자들(강00 등 2007년 당시 2학년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고, 면담 시 피해자들의 머리를 쓸어 넘기거나 귀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함. → 청소년단체 회원이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피해자들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진정을 취하함. (2008.5.)

사례 19

○ 중학교 교장의 남학생 성희롱 (06진차624)

중학교 교장이 학교 남학생들을 교장실 혹은 집으로 유인하여 성기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함. 진정인은 피해학생의 학교교사로서 위 내용을 전해 듣고 진정을 하게 되었으나 피해학생 부모들이 조사를 원하지 않다가 고소를 하여 피진정인과 합의를 하고, 피진정인도 직위해제를 당해 더 이상 조사가 필요 없다며 취하함.(2007.1.)

사례 20

○ 중학교 체육교사의 성폭력 (06진차604)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 피해자가 00중학교 체육교사인 김00로부터 3학년 1학기 동안 수차례 강간 및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진정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해 보니 진정 제기 전 2006. 7. 24. 경찰에 고소를 하여 9.19. 00지검에 송치되어 조사 중임이 확인되어 각하 종결함.(2006.11)

사례 21

○ 고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06진차491)

진정인은 지역여성단체 소장이며, 피해자들은 00고교 졸업생과 재학생임. 피진정인이 00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2005. 9.경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하였다며 진정하였다가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지 못해 진정을 취하함.(2006.12.)

**사례 22**

○ **중학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06진차557)**

00중학교 1학년 1, 2, 3, 4반 여학생의 일부가 하00 교사로부터 성추행(엉덩이 꼬집기, 키스, 가슴 만지기 등)을 당하였는바, 피진정인의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를 원한다는 익명의 투서가 접수됨.  
 → ‘00중 1학년 1, 2, 3, 4반 여학생들’이라는 명의의 서면으로 제기되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진정이 익명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각하요건에 해당함. 그러나 투서 내용 확인을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씨 성을 가진 교사가 1학년 2반의 한 여학생을 뒤에서 안은 사건이 있어 사표를 제출하여 면직되었음.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건 종결됨. (2006.11.)

**사례 23**

○ **중학교 교사의 남학생 성희롱 (05진차691)**

진정인은 00중학교(남녀공학) 3학년 학생으로 위 학교 교사가 음악 실기시험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의 성기를 단소로 3~4대 때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고 진정하였다가 취하함.(2005.8.)

**사례 24**

○ **고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05진차454)**

여고 교사인 피진정인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체벌을 가하면서 다리 사이를 쳐다보는 등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있으니 조치를 바란다며 진정하였다가 취하함.(2005.8.)

**※ 참고 사례**

○ **고교 동급생에 의한 성폭행 (10진경4638)**

진정인은 2010. 3. 29. 학교 수련회에 갔는데, 3. 30. 밤 다른 반 동급생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진정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욕을 하면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성추행을 함. 진정인은 이로 인해 등교하지 못했고, 담임에게 등교하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담임도 당분간 쉬라고 했음. 그러나 가해자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반면 진정인은 무단결석을 이유로 2010. 6. 퇴학 처분되었다며 2010. 7.진정함.

→ 본 건은 학생 간에 발생한 일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이 아니나 내용이 심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학교 및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진정인에게 폭행, 욕설과 함께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해 보인 사실이 인정되나 성기 삽입 등 추행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함. 가해자는 「소년법」에 의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학교는 교내봉사 7일, 전문가 심리치료·상담(4개월), 교육청 상담프로그램 이수(5일) 등을 결정했으며 진정인에 대해서도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려 했으나 장기결석(누적 57일) 및 등교지도 계속 불응으로 부득이 퇴학 처분된 것으로 확인되어 각하 종결됨.(2010.10)

## 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진정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 1) 진정 건수 미약, 자기 권리구제의 취약성으로 사각지대

인권위의 2001년 11월 설립 시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전체 성희롱 진정사건 중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210건으로 전체 성희롱 진정의 약 12%를 차지함. 그 중 초중고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은 2005년부터 진정이 있었는데 지난 상반기까지 10여년 동안 24건이 접수된 것으로 그 수가 극히 미미함. 24건 중 권고사건은 2건에 불과하며 1건은 합의로 종결되었고, 2건은 기각, 나머지 19건은 조사 중 당사자 간에 해결되어 취하하거나 형사절차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 또는 종결되어서 인권위가 본격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음. 대학 교수에 의한 학생 성희롱 진정에서 11건의 권고가 있었던 것에 비해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진정에서 권고가 2건에 불과한 것, 24건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진정 중 취하한 것이 12건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것 등을 볼 때 초중고 학생들이 자신을 지도하는 교사를 상대로 진정하는 것, 그리고 진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음. 이처럼 초중고 학생들은 자기 권리구제에 매우 취약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초중고의 성희롱이 현재까지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 2) 제3자에 의한 진정이 대부분이며, 주변인들의 조력 필수

진정인은 피해학생 본인이 진정한 것은 7건, 본인 외 제3자가 진정한 것은 17건임. 학생 본인 보다는 선배 1건, 부모 9건, 지역 상담소나 여성단체가 상담을 통하여 알게 되어 진정한 건이 3건, 청소년단체 1건이며 학교 내 교사, 상담교사, 특수교육보조원에 의한 진정이 4건임. 피해자 이외 제3자에 의한 진정이 훨씬 많은 것은 초중고 학생들이 아동청소년기에 있어 부모와 상의 후 부모가 대리하여 진정하기 때문임. 그리고 지역 상담소 등 단체에서 피해자를 상담하거나 제보를 받은 후 진정하면서 사건 해결을 지원하는 경우와 학교 내 교사 등이 대신 진정한 것들을 볼 때 초중고 학생들의 성희롱 문제에 대하여는 주변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들의 조력과 지원이 필수적임을 보여줌.

### 3) 성적 언동 유형은 말로 하는 성희롱부터 형법상 강제추행까지 다양

접수된 24건의 초중고에서 발생한 성희롱 진정 내용에서 피진정인이 학생에게 가한 성적 언동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록 대다수 사건들이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임을 감안하더라도 성희롱 행위의 양태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들이었음. 그 내용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사례4,9,15)에서부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불쾌한 신체접촉(사례17), 복장검사를 빌미로 은근슬쩍 접촉하는 것(사례3,8), 그리고 형법상 성폭력 범죄를 구성하는 사건까지 행위의 정도와 폭이 매우 넓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음. 사례5, 6, 7, 13, 16, 20 등 6건의 진정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어서 인권위가 각하한 것들인데,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된 것은 성희롱 행위 내용이 심각한 성추행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임.

### 4) 행위자 중 교장·교감·부장 등 관리자 다수, 구조적 권력관계에서 발생

초중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은 수직적 불평등 관계 속에 있는데 24건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진정 중 교장(사례1,4,19), 교감(사례17), 학생부장(사례8,15)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어 상대적으로 권력관계의 우위에 있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 진정도 6건이나 발견됨. 교장, 교감 등은 학교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사하고 조치해야 함은 물론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행위자로 진정당한 것을 볼 때 일반 교장 등 관리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보여줌.

### 5) 학생지도 과정, 체벌과정에서 성희롱 다수 발생

대학교 교수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들의 결정례를 보면 성희롱 발생 장소가 회식장소 등 사적인 장소를 포함하여 교실에서 수업이나 시험 보는 도중 또는 연구실 등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음. 그리고 학교에서 발생한 교사간 또는 직원간 성희롱 사건들은 회식자리 성희롱 등 직장 성희롱에서 발생하는 유형의 내용들이 많음. 반면에 초중고에서 발생한 성희롱사건은 교내에서 발생하거나 학생지도 과정(사례4, 사례14) 또는 학생들을 체벌하는 과정(사례18, 사례23, 사례24)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을 가하는 경우들이 많아 학생들이 구조적 억압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데 학생 지도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함.

#### 6) 행위자에 대한 조치 내용 미약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면 권고사건의 경우 2건의 권고에서 모두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고 1건은 해당 교육청에 경고할 것을 주문하였음. 그러나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분과 처벌이 강화되고 특히 교사와 같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이 도입되는 경향 속에서 향후에는 유사한 사건들에서 인권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징계 권고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라. 학교 내 성희롱 예방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

#### 1)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 주는 평가체계 개선

학교 내 교직원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보건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보건교사 등은 교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해결토록 하고 있지만, 교장 등 관리자 입장에서는 학교에 성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교육청 등 외부기관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관리감독상의 책임으로 승진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로 인해 A고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듯이 사건의 해결 보다는 은폐, 축소로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학교나 기업 등 어느 조직에서든 크고 작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감독기관에 사건발생이 없다고 보고되었다 하더라도 성희롱 사건의 특성 상 신고가 안 되거나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단순히 사건이 많이 발생한 학교를 저평가하는 대신 발생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한 학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평가방식과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

#### 2)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현재 구성되어 있는 학교 내 관련 위원회

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 내 성희롱,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지 의문임. 인권위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학교 내 심의위원회에 등에 출석하여 위원들로부터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거나 2차적 피해를 주는 ‘모욕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호소하거나 여성 위원들이 일정상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남성 위원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질문을 받았다’는 등 내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심의위원들에게 성희롱 조사 및 처리방법에 대한 사전교육과 성평등 교육 등을 받게 하거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임.

### 3) 학생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학교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교육이 구태의연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많은데, 예컨대 방송실에서 강사가 마이크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방식의 교육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음. 대면교육에서도 집중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은데, 영상과 소리로만 교육이 실시될 경우 그 시간은 거의 학생들의 평소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수면시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다는 실적보고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음. 내실 있고 효과성 높은 성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현실을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들이 연계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4) 교육부와 교육청에 전담기구 설치

학교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A고 사건의 사례에서처럼 내부에서 원만히 제대로 처리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움. 피해자가 내부에서 어렵게 신고를 하여도 내부 교사, 심지어는 가해교사까지 포함된 성고충위원 등이 성희롱 사건 조사 및 처리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에 전담부서와 전담창구를 설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교육부, 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정책의 수립과 함께 엄정한 조사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5)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학생들이 성희롱, 성폭력 등 부당한 차별과 피해를 당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지도록 정규교과 등에 인권과목을 편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교 내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때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임. 학생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포함해야 할 것임.

#### 6)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의 성폭력 이용에 대한 홍보 제고

학교폭력 신고전화인 117로 성폭력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 현장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 차원에서 117 신고전화에 일반 폭력 뿐 아니라 성폭력,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가정통신문 등으로 알려야 할 것임. 끝.

##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 토론회

- ▣ 김성애 (부천공고 교사)
- ▣ 백미원 (압구정고 교감)
- ▣ 박현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  
센터  
기획부장)
-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 ▣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 ▣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토론 1

# 학교 내 성희롱 사례와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안



| 김성애 (부천공고 교사)

## 1. 들어가는 말

학교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다만 그 중 일부가 사건화 될 뿐이다. 대부분은 피해자가 사건화를 포기하고 가슴에 묻거나, 소문으로 떠돌다 관련자들이 졸업, 혹은 전근을 갈 경우 사람들의 입방에서 사라진 후 누군가가에게는 가끔 떠오르는 학창 시절의 추접스러운 스캔들로 기억 속에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여교사, 여학생들이 성희롱 피해를 더 이상 참지 않고 알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여학생들의 의식의 변화는 그간 학교 성교육의 성과이다. 한편으로 배움이 행동으로 변화하는 것은 현실의 존재들에 의해서이다. '1993년 서울대 신00교수 성희롱 사건'에서부터 무수한 여성들이 성희롱에 저항해왔다. 그들은 성희롱 피해자라는 슬프고 무기력한 정체성을 극복하며 성희롱 저항가로서 자신을 다시 정체화했다. 이런 여성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학교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고발, 저항이 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성희롱에 대한 고발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가?

지금까지 학교 내 성희롱의 원인, 배경으로 지적된 것은 교사-남성-나이 권력 위계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성희롱은 권력 위계 이외에도 생활지도라는 기본적인 교육활동 속에서 발생한다. 이 글은 교육, 생활지도 활동과 성희롱의 관계를 문제 삼고자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여교사들의 성희롱 피해 상황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학교 성교육의 성과를 뒤로 돌리는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학교 성교육에 대한 다른 상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학교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시선의 변화를 강조하고자 한다.

## 2. 생활지도와 성희롱

### 1) 사례

1. 고1 남, 담배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면서 남교사가 몸을 더듬고 성기를 건드렸다.
2. 중3 여, 치마폭과 길이를 줄이고 화장을 했다고 남교사가 ‘술집 다니냐’라고 말했다.
3. 고3 여, 교무실에서 여교사가 브래지어가 흰히 보인다고 지적을 했다.
4. 고1 여, 학기 초 첫 수업에 들어온 남교사가 짧은 머리와 바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보고는 ‘여자야? 남자야?’ 라고 놀리듯 물었다.

### 2) 문제의식

성희롱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력, 외모와 복장에 대해 지적하거나 쳐다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 활동 중 생활지도와 상담은 성희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항상적으로 있는 활동이다.

생활지도란 보통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도록 통제하고 규칙을 어긴 학생들에게 적절한 제재를 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교정하는 활동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등으로 생활 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대다수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생활 규정을 적용하려는 학교-교사의 노력은 일부 학생들과 갈등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학교-교사들은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 라는 학생관을 바탕으로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데 이를 생활 지도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한다. 이 과정에서 규정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학생들은 소위 문제아로 범주화되고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진한 화장, 몸에 붙고 길이가 짧은 치마를 소위 ‘술집여자, 술집년, 술따르는 여자’로 불린다. 심각한 언어 성폭력이지만 피해자는 항의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소위 품행이 건전한

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 교사들로부터 저런 말을 듣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할 자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 남성다움에 대한 교사들의 고정 관념은 언어적인 성희롱으로 연결된다. 복장 이외에도 학생의 태도, 자세, 행동 양식을 남/여성으로 분할하고 강제할 경우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다. 그러나 문제는 교사는 이런 감정과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혜의 글에서는 ‘학생 상담’을 구실로 성희롱이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학생의 어려움을 듣고 도우며 헤아리는 자리가 오히려 학생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자리가 된다.

동료 교사의 개입도 어렵다. 생활 지도는 교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한 상황이고 개입은 마치 문제아를 용인하고 생활 지도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지어 학생들의 직접적인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3) 제안

가. ‘생활 지도’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대체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억압적 규정은 최소화하고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규정 들은 과감히 삭제 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화장, 복장 등등).

나. 관리자-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고충 처리 과정 등을 교육해야 한다. 대부분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성희롱, 성폭력 사례를 통해 무엇이 성희롱인지 이해하고 이후 처리 과정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권 감수성이 있어야 차별이 보이고 교사-여/남성-나이 권력이 보이기 때문이다.

라. 김정혜의 글에서도 지적하듯이 특히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3.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 1) 남성 관리자, 남교사가 가해자인 경우

##### 가.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주로 저경력 여교사들에게 고경력 교사 혹은 관리자들이 교직 생활에 대해 가르쳐 준다거나 모르는 걸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성희롱이 발생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중고등학교 스승-제자 관계를 이용하여 도움을 준다며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외모, 복장에 대한 성희롱적 지적이나 시선 역시 비슷하다.

나. 교직 사회 구성원들이 성희롱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렵고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어떤 이유로도 행동을 합리화하기가 어려우며 과거와는 달리 여교사 집단의 발언력이 강해진 것이 다른 점이다.

#### 2) 교사 권력보다 위에 있는 남성 권력 - 성희롱에 노출된 여교사들

가. 지금 학교에서 여교사들을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바로 남학생들에 의해 행해지는 성희롱이다. 쉬는 시간, 수업 시간 등 남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여성비하적인 욕(미0년, 씨0년)을 하고 있다. 일상적 언어 현상이다. 여교사 개인에게 직접 하는 욕은 아니지만 여성 일반을 혐오, 비하하는 욕을 계속 듣는 것 자체가 성적 폭력이다. 여성 비하 욕은 대체로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고 이유는 욕하는 맛이 있다고 한다. 매번 지적해도 습관이고 문화이기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욕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차원의 적절한 지도는 없다. 사실 여교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

나. 여교사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거나 성적 농담을 건네는 남학생들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 사건화 되기도 했지만 실제 비슷한 일을 겪은 경우 문제를 제기하면 아이의 앞날을 생각해서 문제를 조용히 덮으라는 요구를 받거나 심지어는 당신이 그럴만한 빌미를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한다. 심지어 가해자와 보호자들은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발뺌하며 도리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발 등의 협박을 하기도 한다.

### 3) 제안

가. 여교사들의 학교 내 발언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학교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우선 여교사들은 지금보다 좀 더 ‘떠들고, 설치고, 생각’을 해야 하고 학교-관리자는 여교사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학교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나아가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힘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나. 여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성희롱-특히 언어적 추행-은 학교 단위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 혐오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혐오를 내면화한 경우 성희롱, 성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4. 학교 성교육에서 더하고 빼야 할 것은 무엇인가?

### 1) 더해야 할 것

가. 건강으로서의 ‘성’에서 ‘삶’ 으로서의 성을 말해야 한다.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의 연구 개발에 철학, 윤리학, 인문학, 사회학 전공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표준안의 내용을 떠나서 성을 ‘건강’이라는 측면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인식 틀에서 인간의 성은 ‘건강한 성’과 ‘건강하지 못한 성’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성을 개인의 규범적 차원으로 ‘해서는 안 될 일’과 ‘해도 되는 일’, ‘해야 할 일’로만 이해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남/여성은 각자의 성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남자도 조심하고 여자도 조심해야 한다는 결론이 미리 제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살펴보면 ‘성’은 안전하고 바람직한 성교, 임신, 출산의 영역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연관되어 있다. 성희롱은 단순히 억제할 수 없는 성적 충동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신체와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건강하지 못한 특정 일부에 의해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성을 가르치는 것으로 성희롱이나 성과 연결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나.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의 성교육은 성지식이나 개인의 책임, 행동 규범을 알려주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성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나 사회적 편견, 차별 등을 성찰하는 기회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학교에서 해야 할 성교육은 ‘안되요, 싫어요, 하지마세요’를 넘어서서 성에 대한 자신과 사회의 인식 수준, 다양한 편견, 차별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어야 한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삶과 정체성, 사회적 인식, 성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2) 빼야 할 것

가. 형식적인 성교육

김정혜의 지적처럼 각급 학교의 예방교육 실시율은 99.9%이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개인적으로 관리자 등이 함께 성교육을 받는 경우는 기억에 없다.

나. 이성애 중심성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성애를 전제한 성교육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랑 중 일부만을 보여 준다. 실제 존재하지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평등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성교육의 목표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다. 정상 가족 중심성(아버지-어머니-자녀)

소위 정상 가족이 다수이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지 않거나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이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기존의 성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가정의 학생들에게 심리적 내상을 준다. 정상은 없다.

5. 성희롱 사건을 다루는 학교, 교육청의 태도

1) 성희롱은 피해 당사자,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인지한 사람의 신고로 사건화 된다. 피

해자는 성희롱으로부터 고통 받는 존재이며 동시에 성희롱을 문제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존재-고발자이기도 하다. 이들이 성적 폭력에 저항하는 용기있는 사람들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건의 조사와 처리의 핵심은 피해자-고발자의 치유이다.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학교를 바꾸려는 적극적인 실천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학 이후 서울 서대문구 공립고의 재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학교 담장에 피해자-고발자를 지지하는 손자보를 써서 붙인 사진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피해자-고발자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이 가져야 할 태도를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먼저 보여준 것이다.

- 2) 성희롱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괴물이 아니다. 성희롱이 친밀감의 표현, 사소한 일로 간주되고 용인되는 문화에서 바늘 도둑은 소도둑이 된다. 특히 배움이 여전히 권력인 한국 사회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수평적이지 않다. 교사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운 학교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신고 센터나 상담 센터의 확장만큼이나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교사 권력이 학생 권력을 압도하는 한국의 학교 문화를 어떻게 해체하고 새로운 수평적 관계로 재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해답 중 하나가 실질적인 학생 자치의 보장이다. 의견 개진의 권리만이 아닌 실질적인 결정권, 집행권을 가질 때 즉, 떠들고 설치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때 학교 내의 성희롱은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 6. 나가며

학교 내 성희롱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점은 말할 권리가 없는 존재들이 말할 수 있도록, 행동을 통제 받는 존재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권위와 권력이 혼재되지 않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학교 내 성희롱이 근절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구성원 간의 끊임없는 긴장이 서로를 좀 더 존중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존중하는 사람을 희롱하거나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토론 2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백미원 (압구정고등학교 교감)

1. 토론 배경

전국 11,000여개 초·중·고등학교의 대다수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구성원이 모인 교육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인식을 가진 소수의 교직원, 학생 등으로 인해 다수가 건강치 못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을 보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성가치(性價値)와 문화를 정립시킬 수 있는 배움의 장이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곳이다. 하지만, 올해 서울 서대문구 00고교의 성희롱 사건은 어떻게 학교가 ‘성희롱·성추행·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대토론회에 활용할 학교 성문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언 등으로 정책 토론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 학교 관리자 인식 전환

학교 관리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이 단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50~60대 남성들의 의식 구조는 전통 사회에 대한 고정인식이 강하다 할 수 있으며, 권위주의적, 가부장적 인식이 팽배하다 볼 수 있다.

학교는 학교장의 경영철학에 의해 운영되므로 학교장은 성과 관련한 각종 사안 처리에

있어 남녀 평등적, 가치중립적 차원의 가치와 판단 기준으로 처리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예방 활동에 교육적 노력을 기울일 때 학교는 성위험(性危險)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바람직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의 회식문화 개선, 체험과 사례 위주의 교직원 연수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학교의 바람직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학교장 연수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나. 학교 문화를 고려한 성문화 인식 제고 사례별 Q&A 자료 개발 및 보급

단위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대다수의 교직원 및 학생은 사례를 통한 학습을 원하고 있다. 각종 감사도 사례를 통하여 학습을 하여 왔고, 그 효과는 매우 높다. 따라서 교육청 및 교육부는 학교 문화를 잘 이해하는 내용을 성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야 하며, 학교 현장과 괴리감이 없는 현장 중심, 이해 당사자 중심의 성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사례별 Q&A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 다. ‘긴급 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지원단’ 구성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단’ 및 ‘성폭력 범죄 사안 신고 시스템(SOS ☎ 3999-505)’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단위학교는 성범죄관련 문제 처리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사건이 발생하면 매우 곤혹스러워 한다. 잘해야 뭉에도 불구하고 잘 처리하지 못할 경우 뒤따르는 책임에 대한 부담스러움도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건은 은폐시키려는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미숙함에서 오는 오류에 대한 부담감이다. 그러므로 교육청 및 교육부, 아니 국가는 사건을 해결해 주기 위한 ‘긴급 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지원단’ 또는 ‘성폭력예방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일선학교에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2차, 3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과 법제화가 필요하다.

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sup>1)</sup> 보완 법률 신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 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학생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 또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사안을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해당 교육청에 유선 및 서면보고, 피해학생 긴급 보호 조치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성폭력 사안은 학교에서 직접 조사·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피해자 즉시 격리 및 사안 조사, 보호 및 선도 조치, 전문상담기관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성폭력 사안이 학생 상호간, 학생-교사간, 학생-직원간, 교직원 상호간에 발생하면 단위학교에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인지된 사안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후 가·피해자 격리시키고 있다. 이러한 처리 과정의 매뉴얼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며, 이에 따라 학교 성폭력 관련 사안이 처리되고 있다.

성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는 학생 및 학부모도 성교육을 이수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지녀야한다. 따라서 성에 대해 바람직한 규범을 법제화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가칭)'학교성희롱·성추행·성폭력예방및조치에관한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마. 학생·학부모·교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수자료 개발 활용 및 운영

여성부 인권보호과-392호<sup>2)</sup>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선 학교는 매년 2회씩 반복되는 연수에 여성가족부가 만든 일정한 자료를 활용한 강의 내용과 강사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여성부 인권보호과-392호(2010.02.08, 2010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세부실행지침 및 고충상담원 교육계획 알림)

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다.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일어난 사례 중심의 예방 교육을 원하고 있다.

학생 대상의 교육도 학생의 육체적 발달 상황을 고려한 학교급별 성교육 자료가 시급하다.

학생들은 학교급이 달라져도 같은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관점, 학생들이 지켜야 할 성예절(性禮節), 남녀가 평등하고, 상하가 평등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주시민으로 기를 수 있는 교육자료 개발이 시급하다.

학부모 대상의 연수는 학교 문화를 잘 이해하는 전문 강사가 연령·성별·학교급을 고려한 사례 중심의 건전한 성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법률과 같이 가해 학생의 학부모도 성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3. 제언

#### 가. 교감 업무부담 해소방안 강구

초·중등교육법 20조 2항<sup>3)</sup>에 의하면 교감의 임무는 학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는 것이다. 전국 11,000여개 초·중·고등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거의 교감이 맡고 있는 실정이며, 교감은 보통 단위 학교의 약 30여개 정도의 위원회를 주관한다.

따라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은 교감에게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하소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을 저울로 측정하듯이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선 학교의 교감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

3)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과정상의 처리 실수, 사건 은폐 등의 사유로 교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분명 업무 처리 과정의 성실성과 태만함은 구분되어 잘못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교감이 특정한 업무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 대책이 범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나. 'I message(나 전달법)' 생활화를 통한 건전한 성문화 조성

성폭력 예방은 1차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불쾌하다고 생각되면 '나 전달법'을 통한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전달하여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 다.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토론회 운영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 토론회를 개최하여 과연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는 어떠한 학교이며, 이를 위한 각자의 노력은 어떠한 것인지, 성관련 일탈 행동에 대한 조직의 배제 및 대응책은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토론하도록 하여 구성원 차원에서 안전한 학교 성문화를 창출해가도록 유도한다.

#### 라. 신규채용 시 성심리(性心理)검사 및 성교육 연수 실적 반영

신규 교사 채용 후 성교육 실시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밝히고 처리하는 것보다 건강한 성인식이 정착된 자에 한하여 신규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마. 성폭력자 징계 강화 및 추수 교육

학교에서는 교사를 직접 징계할 수는 없다. 교사의 징계는 관할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강화해야 된다. 성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도 강화해야 되며, 가해 학생 및 학부모는 일정 시간만큼 성교육을 받도록 법적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 및 교직원의 경우도 성폭력 가해자는 징계를 통하여 퇴출만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만큼 미혼자는 혼자, 기혼자라면 부부가 함께 성교



욕을 받아 재발을 방지할 때 우리사회는 각종 성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3

#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례를 통해서 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 박현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기획부장)

## 1. 성교육 사례를 통해서 본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2006년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신고의무제도가 발효된 이후 학교 내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는 성폭력 피해 및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모 공립고교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학교 현장의 현실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을 방치하고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해 교사의 위계와 권력에 의해 피해 학생들이 보고조차 못하기도 하고, 보고를 해도 학교에서는 무성의하게 대응하기도 한다. 교사들의 성추행·성희롱은 공식 통계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 교사보다 약자인 여교사나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교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힘 있는 교사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을 띠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 가해 교사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와 상담·치료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성폭력 가해 교사의 상담·치료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1) 아하! 체험형 성교육 과정에서 드러난 학교 교사 성추행 사례

2011년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섹슈얼리티 체험관에 방문한 여중생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도중 ‘학교 교사에 의한 성추행’을 보고받았다. 체험관 교육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관람하게 되는 <What Is Sexuality?> 영상물을 보고 난 후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말해

보라고 하니, 학생들이 ‘교사의 성추행 장면’을 언급하면서 “우리 담임이랑 똑같아요”라는 것이었다.

또 여중생들이 <데이트할 때의 애정 표현에 관한 선호도>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하기 싫은 애정 표현’으로 ‘무릎 위에 앉기’를 체크하였다. 그 동안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무릎 위에 수시로 앉히기도 하고, 교사의 팔이 여학생의 가슴 부위에 닿거나 교사가 학생의 목을 껴안는 행동 등으로 학생들은 소름이 끼쳤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예전에 비해 보급되고 있는 성교육을 통하여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학생들은 이제 자신이 경험한 성추행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피해 후유증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상담 의뢰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2) 지속적 피해 가능성의 문제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 피해를 주는 것으로 성폭력적인 의도가 드러난다. 가해 교사들은 개인 상담 및 마사지, 친근감 등으로 친절을 가장하지만, 계획적이고 의도된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가해 교사들을 방지할 경우,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다른 학생들이 계속하여 피해를 볼 수 있다.

아하! 센터로 의뢰된 학생 피해자들의 경우,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 학생들은 ‘가해 교사와 마주칠까 봐 학교에 가기 싫어지고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또한 ‘가해 교사를 만나면 가슴이 짝 막히고 머리가 쪼그라면서 답답하다, 심지어 악몽을 꾸기도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을 돌보아 주고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교사들, 교사로부터의 성폭력이 학생들에게 주는 충격과 피해 후유증은 그래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3) 학교 교사에 의한 성폭력 대응

아하! 센터 성교육 도중 발견한 위 사건의 경우, 이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교육청에도 보고하였다. 보다 중요한 점은 가해 교사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상담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었고, 본인의 행동이 성폭력임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례는 학생들이 보고한 피해 상황을 학교와 전문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이 사회가 성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믿을만한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한다.

## 2.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상담 사례 분석

<사례 1 : 계획적으로 여러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례>

모 학교 A교사가 학습 및 진로 지도를 핑계로 아무도 없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여학생들을 성추행을 하였다. A교사는 피해 학생 모두에게 면담을 일어서서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뒤쪽에 바짝 붙어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한 행동이 피해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보고되었다. 학교에 아무도 없는 놀토나 교사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교무실에 여학생을 불러들인 경우에는 A교사가 거친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의 성적행동을 보였다. A교사는 모두 착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비의도적인 듯이 행동하고, 그 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별일 아니라는 듯이)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어색해하거나 망설임이 없었다고 한다.(2012)

**분석 =>**

- 1) 피해자 4명 모두 A교사에게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볼 때 A교사의 성폭력적인 의도가 드러난다. 이것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우연을 가장하지만 계획적이고 의도된 상황을 만들어내는 특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A교사의 이런 학생 대상 성추행 행동은 이미 여러 번 했었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행동의 한 부분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2) 가해자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 가능성과 향후 다른 피해 학생들이 속출할 수 있다. 피해학생들이 실제로 A교사가 수업에 들어왔을 때 소름이 끼쳤고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피해 학생과 가해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와 상담치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피해 학생이 생길 수 있다.

- 3) 피해 여학생들의 후유증에 대한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다. 피해 학생 중에 피해정도가 심해서 ‘성폭력 트라우마’의 증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지속적인 상담치료가 필요하다. 자신의 피해사실보다는 학교 생활 및 고입지원에 문제가 될까봐 현재 자신의 피해사실을 억압하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후 후유증이 남성 및 스킨십 기피 증상 등으로 표출될 수 있으므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례 2 : 아픈 여학생을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성추행한 사례>

모 학교 B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등이 아프다는 여학생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여학생의 몸을 자신을 향하게 돌리고 아이들에게 등을 보이게 한 후 마사지를 했다. 마사지를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 여학생은 갑자기 멍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가 아프다며 손을 떼라고 했는데도 B교사는 계속했다. 여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손을 떼었다고 한다. 그 이후 여학생은 학교에 가기 싫어지고 그 선생님만 보면 그 당시 상황이 떠오르면서 짝 막혀서 말도 못하고 답답하고, 뭔가 머리가 쪼한 것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 같다는 피해 후유증을 보였다. 힘든 여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상담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였다(2011).

#### 분석 =>

- 1) 아픈 여학생을 보건실에 보내지 않고 직접 마사지해주겠다는 태도나 여학생의 몸을 학생들이 보이지 않게 돌리는 행동, 손을 떼라고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동 등이 성추행의 의도성과 계획성이 드러난다. 위 사례 A교사와 마찬가지로 B교사 또한 이런 성추행 행동을 이미 여러 번 했었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행동의 한 부분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2) 가해자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 가능성과 향후 다른 피해 학생들이 속출할 수 있다.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와 상담치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피해 학생이 생길 수 있다.
- 3) 이 피해 여학생의 경우 심각한 ‘성폭력 트라우마’ 증상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 가기 싫고 가해교사를 보면 가슴이 팍 막히고 답답하고 머리가 쪼개진다고 한다. 가해교사를 여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피해 여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 상담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 3.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학교 내 처리 절차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응은 피해 학생에 대한 인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학교에서 추진할 대응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성교육 및 성폭력상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자 상담을 실시하고 사건 상황 파악을 해야 한다.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상담·지원하도록 한다.
  - 특히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배려하면서,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담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피해 학생의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 자문 및 상담 기관 :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 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등

- (2) 학교내 성폭력 담당 교사를 중심으로 사안 조사를 하면서 사건 추진 경과를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징계 조치 등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한다.
- (3) 학교 내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의 대응 방안을 결정 한다.
- 심각한 성희롱 사건일 경우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와 상담치료 등을 진행 하도록 한다.
  - 강제 성추행 및 강간 피해일 경우, 병원 및 경찰 연계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형사 처벌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강제 추행 및 강간 사건).
- (4) 가해 교사의 행동이 상습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징계 조치뿐만 아니라 가해 교사가 전문 상담기관으로부터 상담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성인 가해자 상담이 가능한 기관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T&C 예술심리상담연구소 등)
- (5) 동료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혼란스러움과 충격을 받은 교사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 도모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 평소에 가해 교사가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를 했거나 인기 교사로 소문이 나 있는 경우 동료교사들은 가해 교사를 성추행범으로 받아들이는데 혼란스러워 하기도 한다.
  - 학교 교사 대상으로 해당 교사의 성폭력 행위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점과 피해 학생들이 여러 명인 경우가 많고, 학생들에게 미친 피해 후유증과 지속적인 피해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이해와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에 대해 학생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이유

- 1) 교사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의해 학생의 대응방식이 매우 소극적이다. 배우는 입장, 연령에 있어서 어린 입장, 이성 선생님에 대한 학생의 입장은 위계에 의한 권력에의 순종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 2) 교사의 성폭력이 교육의 형식을 빌어 많이 발생하므로 학생의 부정적인 느낌을 밖으로 표출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3) 교육으로 포장되어 교사에 의해 주입되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야하는 건지 갈등상태에 놓이게 때문에 소극적이다.

(6) 성폭력 사안을 보고했던 반의 학생들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 사안이 사건화 되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 성폭력 피해 사례 보고한 것에 대한 격려와 그 의미, 향후 학교의 조치 안내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안내해주고 비밀 보장 및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약속, 학교 내 안전한 성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8) 학교 내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하려는 직원의 '성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여 성범죄자와 일정한 거리를 확보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통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4. 학교 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내 안전망 구축 방안

1) 학교 내 성폭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체계 및 제도를 마련한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성폭력 발생 시 신고 방법,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제도,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징계 처리 절차, 사안 해결을 위한 담당교사 선정, 성고충 처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을 마련한다.

2) 학교 내 성폭력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사안 담당교사를 정하고 '성희롱고충처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사안 담당교사와 위원들이 사전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사안 처리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 ※ 성폭력 사안 처리시 주요 원칙

- 사안 담당교사는 성폭력 상황을 보고받았을 때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에 근거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성폭력 상황에 대한 보고나 신고를 받았을 때 애매모호하거나 대응 방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한다.
- 피해 학생 중심으로 사안을 처리한다.
- 사건을 숨기거나 학교 내에서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 학교의 잘못된 대처로 수사 및 피해 학생의 치료시기를 놓쳐 더 큰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중대한 성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사안조사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다른 교사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주위 학생들에게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지지 및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킨다.

\*출처 : 「성폭력 대응 지침서 '대안학교 내 또래 간 성폭력을 중심으로」,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2015

3) 평소 성관련 지문 및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한다.

- 성교육 실시와 성폭력 피·가해 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전문가를 섭외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4) 성폭력 상황 발생 시 ‘신고하는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한 학교 내 체계 및 제도를 만들어서 학생 및 학부모, 교사들에게 주기적으로 공지한다.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 내 성폭력 안전망 체계 및 제도(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성폭력 발생 시 신고 방법,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제도,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징계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안내한다.
-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어른, 즉 교사, 학부모, 또는 성폭력 사안 담당교사(담당 교사가 누구인지 사전에 교육을 통해 알려줌)와 의논하도록 지속적으로 공지한다.

5. 참고 자료

「성폭력 대응 지침서 ‘대안학교 내 또래 간 성폭력을 중심으로」,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2015

「아하!뉴스레터 칼럼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현실과 대응 전략」, 박현이,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2011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교육부, 201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2014

「교사를 위한 성폭력 상담 지원 매뉴얼: 함께 건너는 징검다리」, 서울특별시교육청, 2008



토론 4

# 학교 내 성희롱 방지 관련 대책방안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그동안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실적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한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27일에는 공무원·군인·교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고, 8월 27일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학교 성폭력에 초점을 맞춘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여러 대책 내용 중 여기서는 주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희롱 방지 조치 실시 현황과 보완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1. 관련 법·제도

성희롱 관련 정의 규정과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등을 규율하는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본법」,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은 그 적용범위가 ‘국가기관등’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표 1. 성희롱 관련 주요법률>

소관기관	소관법률	주요내용	특징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예방 교육 등)	고용차별금지 처벌에 관한 개별법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장의 의무(교육, 예방지침제정 등)	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	기구운영에 관한 법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등’에 속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성희롱 방지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성희롱 방지조치의 세부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조치로는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과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이 있다. 이러한 방지조치에 관해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연도 이행 실적을 익년도 2월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지조치에 대해 매년 점검하여 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언론공표와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등을 학교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밖에 동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수사(검찰청, 경찰청) 또는 조사기관(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을 통해 통보 받은 경우 해당기관에 관련자를 징계요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 2. 성희롱 방지 조치 실시 현황 및 한계

주요 성희롱 방지 조치 중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의 평균 예방교육 실적은 '14년 99.9%로 100%에 달하며, 이중 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은 95.5~95.9%, 기관장 참여율은 97.8~98.2%로 비교적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의 '14년 총 교육횟수 19,663회 중 상대적으로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강사 및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이 11,239회로 전체 교육횟수의 57.2%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은 각 학교가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shp.mogef.go.kr)에 자체 입력한 실적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각 학교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일부 학교의 폭력예방교육 현장 점검 결과, 사이버교육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실적이 제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단순히 유인물 배포만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자기보고식 실적 입력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015년 처음으로 일부 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예방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표 2. 연도별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단위 : %, 회)

구분	예방교육 실시율	평균 교육실시 횟수	종사자 교육 이수율	기관장 참여율
초등·공민학교	99.9	1.6	95.5	97.8
중·고등공민학교	100.0	1.9	95.9	98.2
고등·고등기술학교	99.9	1.9	95.9	98.0

<표 3.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단위 : 회)

구분	교육횟수	교육방법					
		전문강사	외부강사*	사이버	시청각	내부직원강의*	기타**
초등·공민학교	9,308	952	4,197	2,453	306	1,399	1
중·고등공민학교	5,992	534	3,017	1,431	195	814	1
고등·고등기술학교	4,363	393	2,146	1,078	170	576	-

\* 2014년 신규점검항목

\*\* 기타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미입력

다음으로 방지조치 중 성희롱 고충상담 전담창구 설치,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등 고충처리 절차와 관련된 실적을 살펴보면, '14년 각급학교의 고충상담 창구 설치율은 초등·공민학교 96.5%, 중·고등공민학교 94.9%, 고등·고등기술학교 95.3%이며, 다수의 상담창구는 부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년 기준 고충상담원 지정 비율은 초등·공민학교 96%, 중·고등공민학교 94.1%, 고등·고등기술학교 94.5%로 대다수의 학교에서 고충상담원이 지정되어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남녀를 포함하여 2.8~3.2명이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심의위원회의 경우 '14년 기준 설치율이 초등·공민학교 96.4%, 중·고등공민학교 92.6%, 고등·고등기술학교 93.3%로 대다수의 학교에 고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고충심의위원의 성비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제외하고는 여성 위원 비율이 남성 위원 비율보다 높았다.

<표 4. 고충상담 전담창구 설치 현황>

(단위 : 기관수, %)

구분	교육대상기관(a)	고충상담 창구		독립장소 설치		부서 내 설치	
		설치기관(b)	설치율(b/a)	기관수(c)	비율(c/b)	기관수(d)	비율(d/b)
초등·공민학교	5,934	5,729	96.5	1,956	34.1	4,777	83.4
중·고등공민학교	3,192	3,029	94.9	1,528	50.4	2,391	78.9
고등·고등기술학교	2,360	2,249	95.3	1,127	50.1	1,810	80.5

<표 5.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현황>

(단위 : 기관수, %, 명)

구분	교육대상 기관(a)	고충상담원 지정 기관		고충상담원 지정 인원			
		지정 (b)	지정비율 (b/a)	남성	여성	합계 (c)	평균인원
초등·공민학교	5,934	5,699	96.0	7,333	8,782	16,115	2.8
중·고등공민학교	3,192	3,003	94.1	4,317	4,971	9,288	3.1
고등·고등기술학교	2,360	2,231	94.5	3,587	3,604	7,191	3.2

<표 6.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 기관수, 명)

구분	교육 대상기관(a)	위원회 설치기관(b)	위원회 설치율(b/a)	고충심의위원 구성		
				총위원수	남성	여성
초등·공민학교	5,934	5,722	96.4	33,330	14,731	18,599
중·고등공민학교	3,192	2,955	92.6	17,766	8,799	8,967
고등·고등기술학교	2,360	2,203	93.3	13,601	7,659	5,942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대다수 초·중·고등학교에 고충상담 전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이 되어 있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고충상담원이 보건교사 또는 일반교사를 주로 겸직하고 있고, 고충상담원 지정 인원 중 관련 교육을 이수한 비율도 '14년 기준 30.5%(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성희롱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된 인원 32,594명 중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인원은 9,953명)에 불과하여 실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사건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12년에 국가기관등의 유형별\* 사건처리 매뉴얼(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2012년)을 개발하여 보급한바 있으며, '15년에는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을 개정하여 각급학교에 안내하였다. 표준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등 학교장의 의무를 강화하고,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희롱 외부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 것과, ▲학교 내뿐만 아니라 외부기관 종사자도 성희롱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성

희롱 방지조치 지침 개정과는 별개로 여성가족부 「201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상 ‘성희롱 방지조치 배점표’에도 고충상담원의 전문교육 이수 여부와 외부 전문가의 고충심의위원 위촉 여부를 반영하여, 성희롱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표 7. 고충상담원 지정 인원 및 고충상담원 교육이수 인원>

(단위 : 명)

구분	고충상담원 지정 인원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인원			
	남성	여성	합계	평균인원	남성	여성	합계	평균인원
초등·공민학교	7,333	8,782	16,115	2.8	1,875	3,187	5,062	2.1
중·고등공민학교	4,317	4,971	9,288	3.1	1,052	1,725	2,777	2.3
고등·고등기술학교	3,587	3,604	7,191	3.2	820	1,294	2,114	2.2

### 3. 학교 내 성희롱 방지 조치 보완 방향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 내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실적 입력 및 점검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예방과 관련해 예방교육 실적 허위 보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관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감사 시 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는 등 예방교육 실적 점검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교육 콘텐츠도 학교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보다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충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의 참여 창구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고충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 개설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교원 대상 성폭력 대응 연수자료 제작 및 연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자급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도 별도로 개발 중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 참여 창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징계 절차에서 성(性) 관련 외부 전문가가 서면 등을 통해 피해자 관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성 관련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 완료 시 관계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풀을 교육부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 내 성희롱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해서는 성희롱 발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2014.5.28. 2015.7.1. 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하는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에 초·중·고등학교 100개소 포함되어 있어 부분적으로나마 학내 성희롱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희롱 실태 조사의 주 내용은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와 종사자 및 근로자 대상으로 성희롱 방법, 장소, 예방교육 등에 대한 것으로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성희롱 방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고자 한다.

#### 4. 나가며

학교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책이 미처 포괄하지 못한 정책적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할 것이다. 오늘 토론회가 보다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한 활발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한편, 피해자 관점의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학교, 피해자 지원기관, 경찰, 교육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연계가 보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토론 5

#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



▮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 추진 배경 및 경과

- 최근 발생한 공립고 교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의 성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증가
  - ※ 관련 언론 보도 : 노컷뉴스 ('15. 7. 29), MBC·조선일보·세계일보('15. 7. 30), 한국일보('15. 8. 3) 등
- 성범죄 교원의 징계를 강화하고 교단에서 완전 배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학교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사건 은폐·축소로 피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초기 대응 체계 보완, 책무성 강화 등 관련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

**【그간의 추진 경과】**

-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대책' 수립('14. 9. 5.)
- 「교육공무원법」 등 5개 교직배제 관련법령 개정 추진('14. 9. ~ )
- 교원의 성폭력 비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15. 3. 27.)
- 모든 성폭력, 미성년자·장애인 성매매 비위 최소 해임 징계 강화('15. 4. 9.)
- 학교현장의 교원성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 수립 공문 시달('14. 1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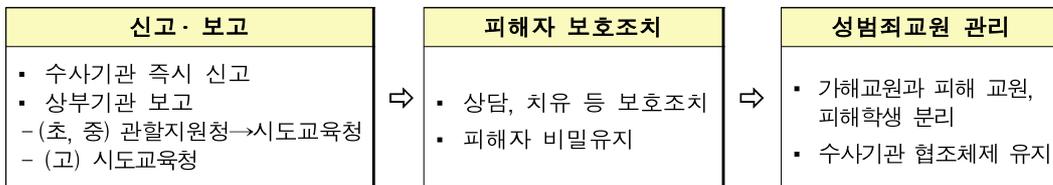
## □ 주요 내용

### 1 성폭력 발생시 대응체제 강화

핵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에 대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교원간의 성폭력 사안도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신고체제 구축</li> <li>❖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시 담임해제, 직위해제 등 피해자 보호 조치 이행 및 신속한 징계 처리</li> <li>❖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 강화</li> </ul>

- (신고·보고 체계 구축)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 온라인(117 채팅신고 앱, 인터넷 등) 신고 및 학교폭력사안 처리 매뉴얼에 따른 보고 조치
- 피해교원이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 교육부 전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시 경찰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통보하는 핫라인(Hot-line) 구축\*\*
- 학교(학교장, 고충상담원)에서는 교원 성폭력 인지 시 바로 경찰 신고 및 즉시 교육청에 보고 체계 구축
  - \* 교육부 홈페이지에 교원간 성폭력 신고 전용 창구 개설 및 신고센터 마련
  - \*\* 관계기관(경찰청, 여가부) 협의 추진 및 신고·보고 관련 절차, 기준 마련('15. 8~)
- 성폭력 발생시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징계강화 등이 포함된 연수자료 제공, 교원 연수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등 추진 ('15. 8.~)

#### 【대응 매뉴얼 체계(안)】



- **(성폭력 발생시 즉시 격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인지 즉시 성범죄 교원을 격리**
  - **(학교)** 성폭력 발생 인지 즉시 학교장은 해당 교원을 **담임해제, 수업참여 배제 등 피해자와 격리 조치**
  - **(교육청)** 성범죄 수사 통보만으로도 교육감이 **성범죄 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제출('15. 7.), 국공립 교원(교육전문직)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하여 시행 예정('15.11.19)
  
- **(신속한 성폭력 교원 징계처리)**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직위해제 기간(3개월) 경과 후 학교로 복귀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성비위 관련 징계사안은 신속한 징계 절차 진행\***
  - \* 징계의결 기한 단축(60일→30일) :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15. 8.~)
  
- **(은폐·축소시 징계 강화) 학교내 성비위 관련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 가능하도록 하고, 감경 제외사유로 하여 엄중하게 처분**
  -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추진, ('15. 8~)
  
- **(피해자 치유 등 지원)** 피해자 유형별로 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교원치유센터 등 활용)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외부전문기관(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조사 지원 추진
  - \* 학교성폭력 관련 상담, 진술조서, 증거채취 등 경찰 수사지원, 산부인과·정신과 등 의료지원, 무료법률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

## 2 성범죄 교원 교단 원천 배제

핵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 교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일체의 성범죄 형이 확정만 되면 당연퇴직시키고, 성폭력·성매매 비위의 경우 최소 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하여 성범죄 교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시행</li> <li>❖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 제한 및 성범죄 교원의 자격증 박탈</li> <li>❖ 성비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연금 삭감 추진</li> </ul>

- (임용에서 배제) 성범죄로 인한 임용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성범죄교원을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퇴직 조치\*\*
  -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15. 4.)
  - \* (현행) 미성년자, 100만원 이상 벌금형 → (개정) 성인 포함,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
  - \*\* 임용결격사유 조항이 당연퇴직 조항과 연동되고, 사립교원에도 준용
- (징계별로 교단 배제)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 최소 해임되도록 징계를 강화하여 교단에서 배제
  -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시행 ('15. 4.)
- (교원자격 취소 및 취득제한)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검정의 결격사유로 하여 취득 제한 및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정
  -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 ('15. 10.)
- (성비위 교원 해임시 연금 삭감) 성비위로 교원이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연금이 삭감\*되도록 관련 법 개정 추진 검토
  - \* (현행)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한 해임 시에 재직기간별 1/4~1/8 연금 삭감 → (개정안) 성비위로 인한 해임 시에도 동일 적용
  - ※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추진('15. 8. ~)

### 3 학교 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 핵심 내용

- ❖ 학교 구성원의 성 인식 제고를 위해 교원 양성시부터 재직교원까지 교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 성비위 징계 교원은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재범 방지
- ❖ 전교직원(8월 중) 및 전교생(9월 중) 대상 성폭력예방 교육 실시

- (예비교원 인성교육) 교원양성기관의 교직과정 운영 시 교직윤리 외에도 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 강화
- (재직교원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 직무연수과정으로 하여 모든 재직 교원이 이수하도록 의무화
  - 신규 임용 교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 교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게임 형태의 성폭력 예방 콘텐츠 (자가진단) 개발·제공
- (재발 방지 교육)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
  - ※ 시·도교육청별 재발 방지 교육 자체 계획 수립 공문 시달('14. 12. 3.)
- (초·중·고생 교육) 성폭력 신고 및 대응 등 예방교육 내실화
  - ※ 초·중·고 학생 대상 성교육 연간 15시간 중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 실시

#### □ 향후 추진 일정

- 117 교원 성폭력신고센터 구축 및 성폭력 관련 교원 연수자료 마련 : '15. 8월
- 성폭력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15. 8월 ~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인사혁신처 협의 추진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령」
- '16학년도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계획 수립 안내 : '15. 12월

**참고 1**      **개정 중인 법령 주요내용**

단계별	개정 중인 법령 주요내용																					
예비 교원	<p>• <b>(자격증 취득 제한)</b>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검정의 결격사유로 하여 자격증 취득 제한 : <b>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규제심사 중)</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구분</th> <th style="width: 33%;">현행</th> <th style="width: 33%;">개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원자격 취득 제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자</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현행	개정	교원자격 취득 제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자</li> </ul>															
구분	현행	개정																				
교원자격 취득 제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자</li> </ul>																				
재직 교원	<p>• <b>(임용결격 및 당면퇴직)</b> 성인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임용 결격 사유 확대 : <b>교육공무원법(15. 4. 국회 제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구분</th> <th style="width: 33%;">현행</th> <th style="width: 33%;">개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 미성년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 포함</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형의 종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 100만원 이상 벌금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td> </tr> </tbody> </table> <p>• <b>(징계 강화)</b>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최소 해임 : <b>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15.4.9시행)</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구분</th> <th style="width: 33%;">현행</th> <th style="width: 33%;">개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상 및 징계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대상 성폭력 : 최소 견책</li> <li>▪ 미성년 대상 성폭력 : 최소 정직</li> <li>▪ 성매매 : 최소 견책</li> </u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성폭력 : 최소 해임</li> <li>▪ 미성년자·장애인대상 성매매 : 최소 해임</li> </ul> </td> </tr> </tbody> </table> <p>• <b>(직위해제 신설)</b> 성범죄 수사 중인 교원 직위해제하여 학생과 격리 : <b>사립학교법(15. 7. 국회 제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구분</th> <th style="width: 33%;">현행</th> <th style="width: 33%;">개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위해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품 및 성 관련 비위로 수사 기관의 수사·조사 중인 자</li> </ul> </td> </tr> </tbody> </table> <p>※ 교육공무원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완료 (15.11.19 시행, 인사혁신처)</p>	구분	현행	개정	대상	▪ 미성년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 포함</li> </ul>	형의 종류	▪ 100만원 이상 벌금형	▪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	구분	현행	개정	대상 및 징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대상 성폭력 : 최소 견책</li> <li>▪ 미성년 대상 성폭력 : 최소 정직</li> <li>▪ 성매매 : 최소 견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성폭력 : 최소 해임</li> <li>▪ 미성년자·장애인대상 성매매 : 최소 해임</li> </ul>	구분	현행	개정	직위해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품 및 성 관련 비위로 수사 기관의 수사·조사 중인 자</li> </ul>
구분	현행	개정																				
대상	▪ 미성년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 포함</li> </ul>																				
형의 종류	▪ 100만원 이상 벌금형	▪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																				
구분	현행	개정																				
대상 및 징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대상 성폭력 : 최소 견책</li> <li>▪ 미성년 대상 성폭력 : 최소 정직</li> <li>▪ 성매매 : 최소 견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성폭력 : 최소 해임</li> <li>▪ 미성년자·장애인대상 성매매 : 최소 해임</li> </ul>																				
구분	현행	개정																				
직위해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품 및 성 관련 비위로 수사 기관의 수사·조사 중인 자</li> </ul>																				
교단배제 교원	<p>• <b>(자격증 취소)</b> 성범죄자의 교원자격증 취소 : <b>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규제심사 중)</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구분</th> <th style="width: 33%;">현행</th> <th style="width: 33%;">개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원자격 사후 취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자</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현행	개정	교원자격 사후 취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자</li> </ul>															
구분	현행	개정																				
교원자격 사후 취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자</li> </ul>																				

**참고 2**      **신규 개정 예정인 법령 주요 내용**

단계별	신규 개정 예정인 법령 주요내용												
재직 교원	<p>• (은폐·축소시 징계 강화) 학교내 성비위 관련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 의결 가능 : <b>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15. 8. ~ )</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현행</th> <th>개정</th> </tr> </thead> <tbody> <tr> <td>대상 및 징계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내 성관련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 파면 - 최소 견책</li> </ul> </td> </tr> </tbody> </table> <p>※ 동 사항을 징계감경 제외 사유로도 신설 : <b>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8호)</b></p> <p>• (징계의결 기한 단축) 성비위 관련 사항으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60일→30일로 단축) : <b>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 추진 (‘15. 8. ~ )</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현행</th> <th>개정</th> </tr> </thead> <tbody> <tr> <td>징계의결 기한 단축</td> <td style="text-align: center;">60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비위 관련 사항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의결</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현행	개정	대상 및 징계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내 성관련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 파면 - 최소 견책</li> </ul>	구분	현행	개정	징계의결 기한 단축	6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비위 관련 사항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의결</li> </ul>
구분	현행	개정											
대상 및 징계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내 성관련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 파면 - 최소 견책</li> </ul>											
구분	현행	개정											
징계의결 기한 단축	6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비위 관련 사항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의결</li> </ul>											
교단배제 교원	<p>• (성비위 교원 해임시 연금 삭감) 성비위로 교원이 해임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연금 삭감 : <b>공무원연금법(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추진 예정)</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현행</th> <th>개정</th> </tr> </thead> <tbody> <tr> <td>해임시 연금 삭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비위로 징계 해임된 경우</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현행	개정	해임시 연금 삭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비위로 징계 해임된 경우</li> </ul>						
구분	현행	개정											
해임시 연금 삭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비위로 징계 해임된 경우</li> </ul>											



토론 6

#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 문화 개선 대책



ㅣ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I A 고등학교에 대한 즉시 시행 조치

### ■ 인적 쇄신을 통한 학교 운영 조기 정상화

- 소통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학교장 임용
- 해당학교 교육공동체와 힘을 합쳐 조속한 시일 안에 학교 정상화

### ■ 학생 치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성폭력 관련 회복력 신장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지원
- 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
- 전체 학생 심리치료 및 인권교육 지원

### ■ 학부모 심리상담 지원

- 서울학부모지원센터와 전문기관 연계 지원

### ■ 피해교원 치유 지원 및 법률지원

- 서울시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법률지원단 구성

### ■ 대학입시 특별지원

- 고3학생 대상 특별진학상담
- 전체교사 대상 진학지도 컨설팅

### ■ 감사결과 필요 시 회계, 학사분야 감사 및 장학지도

- 신설학교로서 학교운영비 집행 및 학사행정의 적정성 확인 필요

## II

## 성범죄교원의 현장 격리 강화 및 교단 배제

### ■ 사안 인지 즉시 특별감사를 통한 직위해제 및 징계

- 현행 법규상 즉시 현장격리의 한계점 보완
  - \*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 가능
  - \* 11.19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 가능
-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가·피해자의 즉시 격리 및 제반 방어조치

### ■ 성범죄교원 무관용 정책 도입

- 한번이라도 성범죄 연루 시 명단 공개 및 교단 퇴출(성범죄 교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성범죄교원은 자격을 박탈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교육부에 건의)

### ■ 교원임용 단계부터 성범죄 조회 및 예방연수 강화

- 신규임용예정교원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철저
- 신규임용예정교원 직무연수 시 성범죄예방 교육과정 필수화

### Ⅲ 학교 성범죄 신고·처리 시스템 체계화 및 실태파악

#### ■ 성범죄 신고접수 및 처리를 위한 One-Stop System 가동

- 학생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의 준수여부 확인 및 지도
- 교직원 간의 성범죄 발생 시 신고 강화
- 성폭력 전담책임자 배치하여 성 범죄 신고 및 처리 특별관리
- 현행 SOS센터(3999-505)를 통한 교원 성 비위 신고접수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실시간 온라인신고센터 개설
- 철저한 익명 보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조력

#### ■ 학교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 및 정책연구

-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위탁
-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긴급 정책연구

#### ■ 학교 성범죄 긴급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T/F 구성

- 구성인원
  -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아하 서울시립청소년 문화센터
  - 탁틴내일
  - 한국여성변호사회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상담조사관

## IV 학교의 권위주의 문화 척결 및 가부장적인 성 문화 개선

### ■ 학교 내 권위주의적, 가부장적 문화의 폐해

- 폐쇄적인 공동체 문화로 대화, 공감 및 책임있는 행동 등 부재
- 학교 내의 자생적인 건강한 문화 정착 지원 필요

### ■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운영 정착

- 소통 및 협력의 분위기 확산으로 조직 내 책임의식 제고
- 학교 내 권위주의적 문화와 가부장적인 성 인식 개선

### ■ 학교 성고충상담위원회 운영 시스템 개선

- 외부전문가 위촉 및 교육청 사안보고 의무화

### ■ 전체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성범죄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강화

- 주기적인 성교육 실시로 성 평등 의식 및 인권감수성 향상
-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대항 감수성 신장

## V 특별대책기구 설치

### ■ 분야별 담당부서를 특별대책기구로 체계화 및 공식화

- SOS센터, A고피해지원팀, 재발방지 및 예방교육팀, 학교문화 개선팀 학교 생활교육과, 체육건강과,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 성, 인권,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 조직

## ■ 전문가 솔루션

- **교사 대상 연수의 실효성 제고**
  - 성범죄 행위에 대한 학생의 인식 수준에 비해 교사의 인식 수준이 못 따라감
  - 교장 및 신입 교사의 성평등·인권 교육 반드시 의무화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의 교육은 실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통합 교육을 요구하거나 시간을 대폭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 교육청이나 학교 대상의 강의는 교육비가 저렴하여 교육 내용이나 수준이 낮아 교육효과가 떨어짐
  - 운영위원회에서 교사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도 학교 현실만 강조하고 개선의지가 부족
  
- **학생 대상 성교육의 내실화**
  - 실질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 수업시수를 조정(안전, 진로,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으로 학생들의 부담)
  - 방송강의, 집단 강의는 효과가 없으므로 지양
  - 학생 사이의 성범죄는 인식 개선, 교육만으로는 어려우므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꾸준한 관심을 두어야 함
  - 초등 4-5학년에 1년 15시간 집중교육실시 필요(3시간 정도는 외부 전문강사 교육)
  - 연령대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
  
- **교육청에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 사안 발생 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배치, 예산지원, 권한부여 (체계적 대응 매뉴얼, 예방대책 강구)
  - 관련 외부 기관 인프라 구축
  - 가해 교사 징계와 상담치료를 의무화
  -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폐쇄적인 학교 문화를 바꾸려면 사안 발생 시 덮으려는 태도보다는 초기에 적극 개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함

- 학교 밖에 성고충 상담 기관을 설치하고 교육청과 연계
  - ‘성고충 상담소’란 명칭을 바꿔야 함
  - 교내 신고의 마지막 결정은 교장의 몫이므로 피해 학생과 교사의 부담이 큼
  - 교사는 조직 내에서 상담을 받기가 더 어려움
  - 학교 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 기관(인증된)과 연계
  -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전문을 배부하여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게 하여야 함
  
- 학교 내 권력구조 문제의 해결 방안 강구
  - 신설학교 교사 구성이 교장 개인의 친소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규교사가 다수 배정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안배, 신설학교에서의 성과주의로 교사의 심리적 압박감이 심함
  - 학생이 피해자일 경우, 교사가 별점, 입시로 통제하는 권위적인 학교 문화 개선 필요
  - 성평등, 평화적 성문화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실태조사, 토론, 변화를 모색(현재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성범죄 근절 시범학교 20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확대가 필요)
  - 학교 내 민주화를 위한 자치 역량 강화(학생자치, 평교사회의, 학부모회 등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 참고자료 : 학교 성희롱 관련 결정문

- 1)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개선 정책권고 결정문 (2013)
- 2)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권고 결정문 1 (2010)
- 3)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권고 결정문 2 (2010)





##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개선 정책권고 결정문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 제 목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권고

####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1. 교육부장관에게

가. 대학 관련 기본법인 「고등교육법」에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권리구제와 관련된 통합적인 근거법령을 마련할 것,

나. 위 근거법령 따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와 관련한 하위법령(훈령, 예규 등)을 마련할 것,

다. 국가차원의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할 것,

라.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방지조치와 피해구제에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 매뉴얼을 보완·개정하여 보급할 것,

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기구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관련된 지원을 강화할 것,

바. 대학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보급할 것을 권고한다.

## 2.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I. 권고 배경

대학은 양성평등을 구현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수, 조교, 학생, 행정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교육, 고용, 선·후배 및 친구 등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므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관계와 맥락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러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정책과 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러나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하며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대학에서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확인하고자 2012년 ‘대학교 성희롱·성

폭력 실태조사'(이하 '위원회의 2012년 실태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II. 판단 및 참고 기준

### 1.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제17조의4 제1항 및 제2항,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제2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0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제1항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 2. 참고기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제19호'(1992.), UN, 1993. 12. 12. 총회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 등을 참고하였다.

## III. 판단

### 1.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실태 및 쟁점

#### 가. 대학 성희롱·성폭력 개념과 특성

##### 1)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성희롱’은 현행 법령상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성별에 근거한 차별행위로 간주되며, 업무·고용관계에 있는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고 한다)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한다) 등에 의해 규정된 「형법」 상 범죄 행위를 의미하며, 특히 「형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와 성폭력특별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1조) 등 업무·고용관계로 인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성희롱의 예방과 관련하여서는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방지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초·중학교, 공공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과 관련된 근거법령 >

근거법	주요내용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성희롱방지 의무(제17조의2)
	국가기관 등 성희롱방지조치의 내용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제13조 및 제13조의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공공기관 성희롱의 예방교육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제2조 내지 7조)
성폭력방지법	성폭력 예방교육(제5조)

한편,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절차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성희롱’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것이나, 대학내 성적 인권침해와 괴롭힘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용어를 사용하며 구체적인 법령이나 대학 규정의 표현, 예방조치와 관련해서는 문맥에 맞는 개별 용어를 사용한다.

## 2)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특성

대학은 고용관계를 수반하는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 교수, 학생, 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습, 행정, 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어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맥락과 시간, 장소, 피해자의 대처 방식, 주변의 대응 등이 다양하다. 특히 학생집단은 매년 그 구성원들이 교체되는 집단으로 내부적인 문화 또한 다양하고 유동적이다.

이러한 다양성과 맥락의 복잡성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내용 및 사건 발생 시 접근방식 개발을 어렵게 한다.

대학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의 학생에 대한 가해 사건’은 현행 성희롱 관련 법령의 보호 범위 밖에 있고, ‘교수의 학생에 대한 가해 사건’은 그 피해가 학점이나 기타 교육상의 불이익에까지 미침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중하게 나타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지위 차이로 인한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 3)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발생 실태

2012. 6.말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사건 중 교육기관에서의 발생 건수는 전체의 10.7%로 기업체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이 가운데 대학 관련 사건이 49.6%를 차지하여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합한 46.3% 보다 많다. 그 행위 양태를 보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에서부터 「형법」상 성폭력 범죄를 구성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교직원의 교직원에 대한 가해 사건’,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 가해 사건’, ‘학생의 학생에 대한 가해 사건’ 등 사건 관계자들의 관계 유형도 복잡한 편이다.

2012년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대학에 매년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대학교의 경우 연평균 0.6건에서 1.2건, 전문대학의 경우 0.5건에서 1.0건으로 약 2배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 전체 상담기구의 약 65%에서 상담 후 사건으로 접수되는 비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고, 피해사실이 가시화되기 어려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사건 발생률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2년 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여성가족부의 ‘201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이하 ‘2012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라고 한다)를 통해 사건의 관계유형을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학생의 학생에 대한 가해사건, 교수(강사)의 학생에 대한 가해 사건 유형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건의 양상을 살펴보면,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성희롱이 가장 많았으나 강간 12건, 준강간 9건으로 나타나고, 사건 발생 장소는 학외 유흥공간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관 등 학내 공공 장소 22건, MT, 수련회 등 숙박시설 20건, 강의실 15건 순으로 학내공간보다 학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나.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실태 및 쟁점

### 1) 대학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관련 규정

2012년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약 94%의 대학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었는데, 규정 제정의 근거로 명시된 법령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를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한 경우가 36%로 가장 많았고, 여성가족부의 고시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지침」 약 24%, 성폭력특별법 약 23% 등 다양하고, 이미 폐지된 (구)「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약 26%, 근거법령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약 20%에 이르고 있어 대학의 자체규정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규정상 적용요건, 조사대책기구의 참여 대상, 피해자보호 조치의 내용 등에서는 대학간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피해자 보호조치 중 신분노출금지·비밀보장 규정은 대다수 대학이 정하고 있으나, 2차가해 금지, 심리·의료·법적 지원, 공간분리·접근금지와 같은 조항을 포함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난다.

### 2)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 및 인력 운영 실태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기구는 상담기구와 조사대책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상담기구는 상담, 사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성희롱 예방교육과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관련행사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사대책기구는 대체로 접수된 사건을 심의하거나 직접 조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성희롱·성폭력이 위계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을 담당하는 기구의 독립성은 효과적인 피해구제의 주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기구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학생상담센터 등에 부속되어 있거나 학생상담센터에서 직접 담당하는 경우로 전체의 약 70%에 이르고, ‘독립된 성희롱·성폭력 상담소’가 있는 대학은 전체 조사대상 280개 대학 중 73곳(약 26%)에 불과하다. 한편 상담기구의 1년 예산은 1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약 60%로 가장 많고, 별도 상담실이 없는 경우도 27%로, 예산 및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상담기구의 활동의 제한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1년 1년간 한 건도 상담이 없는 대학이 전체의 50%에 이르고, 7개 대학에서는 1년간 상담이 500건 이상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상담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에 따른 활동의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상담기구의 인력 배치 상황을 보면, 상담기구에 상담관련 별도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대학은 전체의 약 7%로서 21개 대학에 불과하며, 약 90%의 대학에서는 일반행정과 상담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전문인력 배치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상담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약 60%이며, 상담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도 그 고용형태는 대부분 계약직으로 업무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상담가 1인이 피해자 상담과 가해자 상담 및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 3) 대학 성희롱·성폭력 처리 실태 및 피해자 지원체계

2012년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사건 접수 후 전체의 약 40%의 대학에서 조사위원회 등의 별도기구의 구성 및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약 37%의 대학은 사안에 따라 상담기구를 통한 절차를 우선하고 있었다.

상담기구를 통한 절차는 사과, 반성문, 가해자 교육 등이 포함되는데 사안의 경중, 당사자간의 타협 가능성 등도 고려되고 있었고, 상담기구의 인력이나 재정, 학내 타기관의 요청에 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절차는 피해자의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과 무관하게 문제해결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계가 필요하며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사건 처리 이후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중 실제경비를 지원하는 법적 지원, 의료지원은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규정상 비밀보장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인이 왜곡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 소속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협조요청 과정, 사건접수 통보 등을 통해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많은 한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가해자의 의무 이행 등에 관한 사후 점검, 사건 발생 공동체의 특성과 문화에 적합한 교육 제공 등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피신고인 측의 요구 등으로 조사의 어려움을 겪거나 법적 분쟁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임교원이 징계를 받게 되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으로 대응하여 상담기구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상담기구 전담인력은 불안정한 지위, 짧은 근무기간과 맞물려 실질적으로 사건 처리를 위한 실무지식 등의 습득·전수를 함에 있어 대학간 사례공유의 단절, 교육기회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4)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태

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학생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규정한 법령이 없고, 직원의 경우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하는 등의 강제수단이 있는 반면 교원의 경우 강제하기 어려우며 계약직 직원이나 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2년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대학이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 빈도는 연간 1회~2회가 가장 많았고, 강사와 대학원생의 참석비율이 10% 미만인 대학이 과반수를 넘어 성희롱 예방교육에 가장 소극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약 89%의 대학에서 외국인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 구성원 증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반수 이상 대학은 교원과 직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12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비율은 대학의 경우 19.6%로 낮은 수준이었고, 2012년 전체 공공기관의 기관장 참여비율이 94%에 이르고 있으나 대학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모두 7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2.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가. 국가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제 구축

#### 1) 통합적인 근거법령 마련

대학 차원에서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단일하지 않고, 고용 또는 업무 관계에 속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성희롱의 예방 등 방지조치 및 피해구제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학 관련 기본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고등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설립·경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등의 업무와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기존 법령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학생 관련 사안을 포함하여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된 근거법령에 따라 대학의 성희롱·성폭력의 체계적인 예방 및 방지조치, 피해구제를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훈령이나 예규 등의 형태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교육부 민권사무국(the Office for Civil Rights, OCR)의 경우, 1972년 「교육법수정안」 제9조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서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참고할만하다. 이 법에 의하면 대학 내 성희롱도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서 규정한 성희롱으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예방 및 처리가 미흡할 경우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에 근거한 ‘성희롱 지침(1997)’에 의하여 학교에서의 성희롱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 2) 국가의 관리·지원 주무부처의 정비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을 근거로 전체 공공기관의 본부단위에 대해 성희롱 방지 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평가하는 등 종합관리를 하고 있어 각 기관별 성격을 고려한 실질적인 관리·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여, 2003. 2.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이후로 상당수 대학에서 학칙을 제정하고 자체적인 조사·관리구제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2005. 10. 「교육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 및 제도의 정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자료 개발보급, 성희롱 예방 전문 교육 실시 및 지도감독 강화 등을 기반으로 대학의 적극적인 성희롱 방지조치와 효율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적극 권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여성정책담당관실 폐지로 현재 교육부 내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부 내에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예방에 대한 종합관리 부처로서 교육부와와의 협의를 통해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의 관리·지

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에 있어서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

### 1) 전담기구의 전문성 제고

성희롱 예방과 적절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전담기구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적절한 권한과 인적·물리적 자원이 필요하고, 각 기관에서 기구의 확장과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관련법령 정비와 예산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전담인력의 불안정한 고용 상 지위와 순환보직, 업무단절, 책임은 있으나 권한이 없는 상황은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의 안정화 및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상담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 업무 간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상담과 사건처리, 교육과 기타 운영 업무 병행에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한 사람의 상담원이 모두 전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의 규모를 반영한 최소 전문상담인력 인원수 요건, 전문상담인력의 자격규정 정비 및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전담상담원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규모가 작은 대학의 경우 겸임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의 최소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방지조치와 피해구제 업무매뉴얼 보급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및 피해유형에 따른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정부 차원의 매뉴얼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성평등교육상담협의회에서 공동 제작한 워크숍 자료와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발간한 「대학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상담을 중심으로」가 있으나 내용이 간소하고 오래되어 보다 상세하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매뉴얼에는 학생과 학생, 직원과 학생 등 유형별 사건에 대한 처리, 검증하는 외국인 구성원과 관련된 예방, 상담 및 피해구제 지침, 관련 민사상 판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행정소송 판례, 대학별 징계와 조치 사례까지 포함한 포괄적 징계양형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당수의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공식적 절차가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지원프로그램,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당사자 지원책,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3) 예방교육 대상 확대 및 내실화

교육 대상에 있어 학생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및 기관장의 교육 참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고, 대학 성희롱·성폭력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효과적인 방식을 강구하여 그 기준과 요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대학 구성원 각 집단의 특성에 적합한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다원화되고 급속히 변화하는 학생들에 대한 예방교육은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내용 변화를 필요로 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평등교육과 성적 감수성 훈련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3. 11. 11.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양 현 아
위	원	김 성 영
위	원	곽 란 주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 득

## 별지

### 관련 규정

#### 1.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의무·평생교육진흥)**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교육기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3. 23.]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2080호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2014. 2. 14.]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2013. 6. 19.]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61호(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 2012. 6. 1., 시행 2012. 9. 2.]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채택 1979. 12. 18., 발효 1981. 9. 3., 대한민국 적용 1985. 1. 26.]

**제10조** 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 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 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 (b)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일한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 (c)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 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 (d)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e)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f)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찍이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 (g)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h)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 7.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 1966. 12. 16., 발효일 1976. 1. 3., 대한민국 적용 1990. 7. 10.]

**제13조 ①**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

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결정문 1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174000 00중학교 교장의 학생 성희롱  
진 정 인 고00  
피 해 자 1. 김00  
2. 임00  
3. 이00  
4. 김00  
피진정인 윤00

####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00시교육청에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00중학교(이하 ‘00중’이라 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00중 교장인 피진정인은 2009. 4. 25. 수학여행 중 버스 안에서 피해자 1에게 ‘백화점에서 옷 한

별 해줄 테니 에버랜드에 남아서 데이트하자.’라고 말하고, 2009. 6.경 가출했던 피해자 2에게 ‘너 가슴 크다, 모텔 갔지? 남자랑 갔지? 어땠어?’라고 말하였으며, 2009. 8.경 피진정인에게 인사하는 피해자 3의 팔뚝과 엉덩이를 쓰다듬고, 2009. 11.경 교장실을 청소하던 피해자 4에게 ‘얼마나 컸나 안아보자.’라는 등의 언동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 2. 당사자 주장

###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08년에 00중에 부임하여 2009년 한 해 동안 상담교사를 맡았는데, 피진정인의 언동 때문에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 2010. 4.경 피해자 1이 상담실에 찾아와서 피진정인으로부터 불쾌한 일을 겪었다면서 진정인과 상담하였다.

2) 2009. 여름경 진정인은 피해자 2가 교무실에 와서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평소 피해자 2가 피진정인이나 교사들에게 자주 혼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지켜봤다. 2010. 4.경 피해자 2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시 진술하겠다고 하여 진정인과 만났는데, 2009. 여름에 교무실에서 온 것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성적 굴욕감을 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피해자 3과 4는 2009. 말경 진정인과 상담하면서 피진정인의 행동 때문에 불쾌하다고 이야기했다.

### 나. 피해자

#### 1) 피해자 1

2009. 4. 25. 수학여행으로 에버랜드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더 놀지 못해 아쉽다고 피진정인에게 이야기했다. 당시 본인은 버스 두 번째 통로 쪽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맞은 편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피진정인이 몸을 돌려 ‘백화점에서 옷 한 벌 해 줄게, 남아서 에버랜드에서 데이트하자.’라고 이야기하였다. 본인이 피진정

인에게 ‘진짜이시냐?’라고 묻자 피진정인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허락받으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피진정인이 어른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친구들과한테는 말하지 않고 수학여행에서 돌아와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올해 친구들과 수학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다가 무심결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학교에 소문이 나서 진정인과 상담했으며 이 문제로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왔다. 아버지가 학교에 다녀가신 후 교감선생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 보시기에 교감선생님에게 다시 한 번 이야기했다.

### 2) 피해자 2

평소 학교 폭력, 금품 갈취 등으로 피진정인에게 자주 불려갔고, 2009. 6.경 가출을 하고 돌아와서 피진정인에게 불려가 면담을 했다. 당시 빛나는 나비 장식이 가슴에 달린 면 티셔츠를 여름 교복 속에 입고 있었는데, 피진정인이 그 장식을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너 가슴 크다.’라고 말해서 부끄럽고 기분이 나빠 한 발 뒤로 물러서 몸을 피했다. 피진정인이 ‘안 나왔던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하루 뭘 했는지 다 적어라, 어디에 가서 잤는가? 밤에 남자하고 있었지? 남자랑 잤지? 모텔 잤지?’라고 물었다. 본인이 먼저 모텔에 갔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피진정인이 그렇게 다그치고 화내면서 묻기에 놀라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더니, 피진정인이 ‘뭘 했기에 안 적느냐? 남자랑 잤지? 어땠어?’라고 물었다. 교장실에서 나와 창피하고 서러워서 교무실에 가서 울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피진정인에게 항의하러 갔다.

### 3) 피해자 3

2009. 8.경 학교 중앙현관에 서 있다가 피진정인과 마주쳐서 피진정인에게 인사했다. 피진정인이 인사를 받으면서 내 엉덩이를 툭툭 치고 여름 교복의 반팔상의 아래로 드러난 팔뚝을 쓰다듬어 기분이 나빴다. 내가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같이 있던 친구가 보았다. 피진정인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지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4) 피해자 4

2009. 11.경 친구와 교장실을 청소했는데, 피진정인은 책상 앞에서 있었고 본인은 친구와 함께 등 돌리고 서서 교장실 문 옆 책장 먼지를 털고 있었다. 등 뒤에서 피진정인이 ‘얼마나 컸나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몸을 돌려 피진정인에게 ‘싫어요, 왜 이러세요?’라고 했다. 피진정인이 느끼하고 징그럽게 여겨져서 싫었다.

### 다. 피진정인

#### 1) 피해자 1에 관한 주장

2009. 4. 25. 수학여행으로 갔던 에버랜드에서 나오는 길에 에버랜드 시계탑 앞에서 ‘에버랜드에서 더 놀고 싶다.’라고 조르는 학생들에게 ‘오늘 하루 더 여기에서 자고 내일 가겠다.’라고 농담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버스 맨 앞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역사와 관련된 설명을 한 후 자리에 앉아 자면서 왔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 1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기억은 없다. 2010. 4.경 피해자 1의 아버지가 본인을 찾아왔지만 피해자 1의 아버지는 본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2) 피해자 2에 관한 주장

2009. 여름에 가출했다 돌아온 피해자 2를 교장실로 불렀다. 당시 피해자 2는 가슴에 빛나는 장식이 있는 면 티셔츠를 교복 속에 입고 있었는데 옷이 몸에 달라붙어 복장을 지도할 생각으로 ‘너 가슴 크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2에게 ‘밤에 한 것을 하나하나 다 써라, 밤에 남자하고 있었지? 남자랑 잤지?’라고 물었다. 피해자 2가 모텔에 갔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성관계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잠을 어떻게 잤냐고 물은 것이다. 그 날 피해자 2의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온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 3) 피해자 3에 관한 주장

피해자 3에게 인사를 받은 것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 3의 몸이나 옷에 손을 댄 기억은 없다.

#### 4) 피해자 4에 관한 주장

교장실을 청소하는 학생들 중에 성적이 좋은 학생 등 일부 학생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피해자 4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그와 같은 말을 교장실에서 청소 중인 학생에게 한 적이 없다.

#### 5) 그 외 이 사건 진정에 관련된 주장

2010.초 진정인이 직책을 맡고 싶어 했는데 본인이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이 본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진정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진정 내용의 상당수는 본인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여겨지는 행동들이지만, 교육자로서 학교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병가 등을 사용하여 정년퇴직하는 2010. 8. 말까지 학교를 떠나 있을 생각이다.

### 라. 참고인

#### 1) 정00(00중 교감)

2010. 4.경 피해자 1과 면담하면서 피해자 1이 작년 수학여행 때 피진정인으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하여 피해자 1을 위로하였다.

#### 2) 김00(피해자 1의 아버지)

2010. 4.경 피진정인을 찾아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피진정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 3) 임00(피해자 2의 아버지)

임00는 2009. 여름 피해자 2로부터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을 듣고 당일 오후 늦게 피진정인을 찾아가 고소하겠다고 항의하였더니 피진정인은 본인에게 화를 풀라고 말하였다.

### 3. 인정사실 및 판단

#### 가. 인정사실

피해자들은 00중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피진정인은 00중 교장이다.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1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2009. 4. 25. 00중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에버랜드를 다녀오면서 숙소로 돌아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피해자 1에게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피진정인이 피해자 1을 향해 몸을 돌려 ‘백화점에서 옷 한 벌 해 줄게, 남아서 에버랜드에서 데이트하자.’라고 이야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1이 이와 같은 사실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면서도 부모님, 진정인, 00중 교감 정 00 등에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1의 아버지가 2010. 4.경 피진정인을 찾아와 항의하였고 피진정인이 이에 관하여 사과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피해자 1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언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피해자 2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2009. 6. 피진정인은 피해자 2와 면담 시, ‘너 가슴 크다, 밤에 남자하고 있었지? 남자랑 잤지?’라고 물었다. 피해자 2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피진정인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피해자 3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2009. 8.경 00중 중앙현관에 서있던 피해자 3이 피진정인을 보고 인사를 하자, 피진정인이 피해자 3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팔뚝을 쓰다듬었다. 피해자 3이 피진정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고 불쾌함을 상기하면서도 당시 입고 있던 교복이 여름 교복이어서 팔뚝의 맨살이 드러났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된다.

4) 피해자 4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2009. 11. 피진정인은 교장실을 청소하던 피해자 4에게 ‘얼마나 컸나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4가 당시 피진정인이 서있던 위치가 책상 앞이었던 것과 자신과 친구가 함께 청소하고 있던 위치가 교장실 문 옆 책장이었으며 당시 먼지를 털고 있었던 점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

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된다.

5) 한편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성과 관련한 노골적인 언사와 혐오스러운 표현을 한 기억은 없으나, 교육자로서 부족한 점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진정인은 2010. 8. 말경 정년퇴직할 예정으로, 2010. 5.경 병가를 사용하다가 2010. 6. 중순경 병가를 마치고 학교에 복귀하였다.

##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업무 관련성 여부, 성적 언동 등의 사실관계, 해당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1, 2, 3, 4의 피해사실 모두 피진정인이 00중 교장으로서 수학여행 참여, 학생 훈계, 학교 및 교장실 내 학생 지도 중 발생한 행위이므로, 교육자로서의 피진정인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적 언동 등에 해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등을 주었는지 살피건대, 2009. 4. 25. 수학여행 중 피해자 1에게 ‘백화점에서 옷 한 벌 해 줄게, 남아서 에버랜드에서 데이트하자.’라고 말한 것은 성인 남성이 사춘기 여학생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만남을 갖기를 암시하는 성과 관련한 비윤리적인 내용이다. 이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장선생으로서 지도를 받는 여학생에게 하여서는 안 되는 성적 함의를 지닌 성적 언동으로, 진심이 아닌 농담으로 건넨 말이었다는 피진정인의 의도는 성적 함의를 인정하는데 문제되지 않는다. 피해자 1은 위 발언을 듣고 ‘피진정인이 어른이고 또 남자이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2009. 6.경 피진정인이 피해자 2와 면담하면서, ‘너 가슴 크다, 밤에 남자하고 있었지? 남자랑 잤지?’라는 요지의 말을 한 것에 관하여 살펴본다. 교장인 피진정인이 지도하는 여학생의 가슴에 관하여 언급하고 대답을 거부하는 여학생에게 남

자와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를 노골적으로 집요하게 캐물은 것은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은 행실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엄하게 훈계하여 지도할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이는 훈계와 지도의 목적을 넘어선 것으로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2009. 8.경 피진정인이 00중 중앙현관에서 피진정인에게 인사하는 피해자 3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 2009. 11.경 교장실을 청소하던 피해자 4에게 한 ‘얼마나 컸나 한 번 안아보자.’라는 한 발언 등은 신체 접촉에 관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피해자 3과 4는 피진정인의 언동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 피진정인이 느끼하고 징그럽게 여겨져서 싫었다.’라고 표현하여 이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보아도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고, 학교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진정인이 향후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피진정인에게 성희롱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4. 결론

이에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결정문 2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3289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등  
진 정 인 남00  
피 해 자 1. 이00  
2. 김00  
피진정인 윤00

####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진정의 요지

피해자들은 2008년부터 0000학교의 윤00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3학년 1반의 학생들로, 피진정인 윤00 교사는 학교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남학생 바지 위로 성기를 건드리거나, 국어수업 중 ‘고’자가 나오면 ‘고추’, ‘자’ 자가 나오

면 ‘자지’라고 가르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머리를 뽕망치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지적 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본인을 “장동건 오빠, 장동건 형아”로 부르게 하는 등 특수학급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바, 징계조치를 바란다.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진정한

진정요지와 같다.

### 나. 피진정한

1) 김00 학생은 부모가 장애인이지만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크게 학습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의 경우 한글을 가르칠 때 어휘 폭이 매우 적어 추상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가령 ‘나’자를 가르칠 때 ‘나라’ 보다 ‘나비’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자나 ‘자’자를 가르칠 때 아이들 수준에 맞춰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간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남학생들과 장난치거나 레슬링, 말타기 등을 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일부러 성기를 만진 적은 없다.

2) 2009년 경 점심 식사 이후 반 학생 중 이00, 김00과 악어장난감(악어 모형의 이빨을 누르면 무작위로 손가락을 깨물도록 된 장난감)으로 게임을 하면서 김00이 다른 반에서 가져온 뽕망치로 걸리는 사람이 머리를 맞았다. 본인이 걸리면 학생들이 본인의 머리를 때렸고, 학생들이 걸리면 본인이 학생들의 머리를 때렸는데, 얼마 후 악어 장난감이 고장 나서 중단하였다. 뽕망치는 소리만 요란하지 아프지 않은 장난감이다.

3) 학년 초 담임을 맡으면서 학부모들과 친해지고자 “제가 특수교육계의 장동건입니다”라는 말을 한 적 있고, 학부모 중 한 분이 장동건 사진을 코팅해서 갖다준 적이 있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는데, 학생들이 누구냐고 물어 장동건이라고 가르쳐준 후 학생들이 장난삼아 본인을 장동건 형, 오빠라고 부르기도 했는

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4) 2008년 1학년 입학시 오리엔테이션에서 학부모님께 정부 방침이 체벌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교육적 목적에서 개수를 정해놓고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때리는 정도의 체벌을 할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적이 있다. 이00의 경우 고집을 부려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한두 대 때리고, 이를 이00 어머니께 알린 적은 있는데, 올해부터는 체벌은 일절 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이00 학생 어머니 핸드폰에 문자메시지(“주말동안 지루하게 내리던 비가~ 이제 멈추는 듯하네요~ 비올 때~ 당신 생각나서 ~ 은근 좋았는데ㅎ”)를 보낸 적이 있는데, 아내에게 보내려다가 핸드폰 주소록 글씨가 작아 실수로 학부모에게 보낸 것이다.

5) 본인이 담당하는 학급에 김00라는 특수교육보조원이 있는데 본인이 김00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태만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자, 이를 불쾌하게 여겨 학부모들이 본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험담을 하고 있는 것 같다.

#### 다. 관계기관의 의견(0000학교)

1) 2010. 6. 해당학급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일부 학부모들을 학교 밖에서 2차례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의 학생지도 방식에 대한 문제, 담임교사로서의 자질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학교에서 피진정인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교사와 학부모·특수교육보조원과 현격한 입장 차이, 담임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과의 갈등 문제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부모가 문제 제기의 당사자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교사에게 경위서와 시말서를 받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주었다. 또한 2010. 8. 23. 해당학급의 담임교사를 교체하였고, 피진정인의 보직을 박탈하여 현재 피진정인은 중학교 과정의 직업담당 비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다.

2) 일부 학생이 복도나 화장실에서 윤00 교사와 마주치는 것을 꺼려하는 등 2010. 11. 23.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고려하여 2011. 3. 1. 부터 피진정인을 본교에서 10km 떨어진 00복지촌 내 00분교로 발령 배치할 계획

이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2011학년도에는 교직원, 특수교육보조원, 차량보조원, 생활지도보조원, 방과후 중일반 교사 등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특수교육보조원 등에 대해 부당한 대우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 3. 관련 규정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관계인들의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대면조사에 참여한 특수교육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0000학교는 지적장애인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1971년에 설립된 학교로, 「초·중등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이 학교에 1994. 3. 1. 채용된 이래 2008. 3. 1. ~ 2010. 8. 22. 동안 피해자들이 속해있는 학급의 담임교사를 맡았다. 3학년 1반은 정00, 김00, 이00, 이00, 송00, 김00 등 총 6명이 재학 중이다.

2) 피진정인은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고’자가 나오면 ‘고추’, ‘자’자가 나오면 ‘자지’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피진정인은 2008년 당시 이00, 김00 학생의 성기를 건드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학부모, 관련 보조교사들 및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진정인이 수업 중 전용 회초리로 피해자들의 발바닥을 서너 대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 나. 판단

##### 1)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 해당여부

어떤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업무 관련성 여부, 성적언동의 사실관계, 해당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안고 있는 아동인 경우에는 그 아동의 지적발달 수준과 장애아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진정인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피진정인은 「초·중등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이 담임을 맡고 있었던 학생들이므로 피진정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성적 언동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의 언동이 성적 함의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이00와 김00의 바지 위로 성기를 접촉한 행위는 성적 함의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있고, 비록 피해 아동들이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이 자신의 성기 부분을 접촉했다면 충분히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의견상 이 사건이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특수학교 교사인 피진정인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조치 차원에서 피진정인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2)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여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뽕망치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피해자들을 발로 차는 등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바,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뽕망치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게임의 벌칙으로 피진정인이 걸리면 피해자들이 피진정인의 머리를 뽕망치로 때리기도 하였고, 뽕망치는 소리만 크지 실제로는 별로 아프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진정인은 전용 회초리로 피해자들의 발바닥을 서너 대 때린 것은 수업시간에 교육적 차원에서 수를 정해놓고 체벌한 것이고 현재는 일체 체벌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뽕망치로 때린 행위, 전용 회초리로 발바닥을 서너 대 때린 행위만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6.

위원장 김 태 훈

위원 김 양 원

위원 장 주 영

---

##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

| 인 쇄 | 2015년 10월

| 발 행 | 2015년 10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조사국 차별조사과

| 전 화 | (02) 2125-9941~6 | F A X | (02) 2125-092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